

INTEGRATED FARM ASSURANCE GFS

청과류 원칙 및 기준

한국어판 6.0-GFS_2024년8월

발행일: 2026년 10월 19일

유효일: 2024년 8월 6일

2025년 1월 1일부로 버전 5.4-1-GFS 대체

면책조항(Disclaimer): 이 문서는 Google이 제공하는 제3자 서비스인 기계번역 엔진 Google Translate(구글 번역)를 사용하여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되었다. 이 번역본은 Control Union Korea(인증기관)와 Korea NTWG(한국 국가기술작업반)가 검토하였다. Agraya GmbH는 번역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번역상의 오류나 오역 가능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GLOBALG.A.P. 원본 문서는 영어로 작성된다. 영어본과 번역본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목차

FV-GFS 1	문서화	4
FV-GFS 2	증장기개선계획	6
FV-GFS 3	인적자원관리	7
FV-GFS 4	외부 위탁 활동(위탁사업자)	9
FV-GFS 5	외부자원관리	10
FV-GFS 6	추적성	11
FV-GFS 7	병행소유	12
FV-GFS 8	매스밸런스	13
FV-GFS 9	제품 회수 및 철수	15
FV-GFS 10	문제제기	16
FV-GFS 11	부적합 제품	17
FV-GFS 12	시험분석	18
FV-GFS 13	장비와 설비	19
FV-GFS 14	식품안전방침	20
FV-GFS 15	식품보안	21
FV-GFS 16	식품기만	21
FV-GFS 17	로고 사용	22
FV-GFS 18	GLOBALG.A.P. 인증 상태	23
FV-GFS 19	위생	24
FV-GFS 20	작업자 건강 · 안전 · 복지	28
FV-GFS 21	농장 입지	34

FV-GFS 22	생물다양성 및 생물서식지	37
FV-GFS 23	에너지 효율	42
FV-GFS 24	온실가스와 기후변화	43
FV-GFS 25	폐기물	45
FV-GFS 26	종묘 등.....	48
FV-GFS 27	유전자변형생물체	51
FV-GFS 28	토양과 배지	52
FV-GFS 29	비료 및 성장촉진제	54
FV-GFS 30	용수	59
FV-GFS 31	해충종합관리(IPM)	69
FV-GFS 32	작물보호제	72
FV-GFS 33	수확후관리	86
	버전/개정 이력.....	90

구분	원칙	기준	수준
FV-GFS 01	문서화		
FV-GFS 01.01	문서와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갖춰야 한다.	기준 이행에 관계된 문서와 기록을 관리하고 통제해야 한다. 절차서는 다음을 포함한다. - 문서 및 기록의 생성, 검토, 승인, 업데이트 방법 - 문서의 검토, 변경, 수정 수행 방법 - 버전 업데이트 방법 - 문서를 관련 직원에게 교부하는 방법 문서는 다음을 포함한다. - 발행번호, 날짜, 페이지 번호 - 내용이 구체적일 것 - 기준서를 만족하는지 주기적인 검토 - 관련 직원에게 제공 - GLOBALG.A.P. 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기준 또는 규범 문서의 관련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 - 담당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배포 - 구버전 문서의 폐기	Maj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FV-GFS 01.02	기록은 최신 상태를 유지한다. 최소 2년간 보관한다.	기록은 다음을 포함한다. - 안전하게 보관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최신상태로 유지 - 최소 2년 (고객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보관해야함 - 전자적 형식으로 사용되는 경우 유효하여야 하며 백업이 되어야함 - 최초 심사일로부터 3개월 이전부터 기록되고 있어야함 - 등록에 포함된 각 필지 및 모든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어야함. 개별 기록이 누락된 경우 해당 기록을 다루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예를들어, 살포 기록에서 살포 날짜가 누락된 경우 해당 기준에 부적합.	Major Must
FV-GFS 01.03	생산자는 기준에 따라 연 1회 이상 자가평가 / 내부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자가평가/내부감사를 통하여 각 기준에 대한 준수 여부를 평가 후 개선해야 한다. 현장 심사를 통해 식품안전, 현장, 장비가 적절히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시행 빈도는 평가된 위험과 활동 유형에 따라 결정한다. 생산자 단체에 속한 개별 생산자에 대한 자가평가와 QMS(품질관리체계)를 갖춘 여러 농장에 대한 품질관리시스템(QMS) 내부감사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1년에 한 번 이상, 인증기관 심사(감사) 전에 실시해야 한다. - 생산자, 지정된 작업자, 컨설턴트 또는 QMS에서 정한 인사에 의하여 시행한다.	Maj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 기준/적용 범위에서 다루는 모든 관련 주제를 포함해야 하며, 위탁사업자가 대행하는 활동(수확 및 수확후관리 등)도 포함해야 한다. - 모든 적용 가능한 현장 및 제품을 평가해야 한다. 자가평가 보고서에는 해당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필수" 및 "준필수" 기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내부감사는 "GLOBALG.A.P. 일반 규정 – 생산자단체 및 QMS를 갖춘 여러 농장의 생산자에 대한 규칙"을 따른다.	
FV-GFS 01.04	자가평가/내부감사 중에 발견된 부적합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효과적인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행한 시정조치를 문서화한다.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모두 변경한다. 필수기준은 100%, 적용한 준필수기준은 95% 이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Major Must
FV-GFS 02	중장기개선계획		
FV-GFS 02.01	중장기개선계획을 문서화해야 한다.	생산자는 자신의 농업 체계를 평가하고 개선할 점이 있는지 파악한다. 이러한 개선 사항은 최대 3년 동안의 계획을 포함하면서도 중장기적이어야 한다. 중장기개선계획에는 자체 목표가 있어야 하고, 각 목표에 대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할 수 있다: - 개선 목표에 대한 설명 - 목표 설정 당시의 최초 상태와 현재의 상태 - 활동 계획 - 계획 완료의 목표일자 및 지금까지의 성과	Maj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FV-GFS 02.02	중장기개선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중장기 계획에는 새로운 절차나 정책, 변화를 정량화하기 위한 데이터 공유, 교육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는 문서화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시행의 결과 및 평가일자 - 시행이 성공적이었는지 또는 성공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의견 -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사유 및 추가 조치 - 관련 데이터를 GLOBALG.A.P. 사무국과 공유	Major Must
FV-GFS 03	인적자원관리		
FV-GFS 03.01	기준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	식품안전과 기준을 수행하는 작업자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직무 기능, 책임 및 직함 - 조직 내 위치 - 연락처 정보 - 부재 시 대체자 특히, 작업자의 건강 · 안전 · 복지에 대한 책임자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Major Must
FV-GFS 03.02	투입물에 대한 기술적 결정을 내리는 사람의 역량을 증명해야 한다.	투입물에 관한 기술적 결정(비료의 제품과 양을 결정, 작물보호제 사용에 대한 결정 등)을 담당하는 개인은 해당 주제에 대한 역량을 증명해야 한다.	Maj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기술적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생산자, 작업자 중 한 명, 또는 외부전문가인 경우, (자료 학습, 교육 수료, 자격증 획득 등을 통하여) 그들이 최신 지식을 계속 학습하도록 하여야 한다. 외부전문가인 경우, 공식 자격증이나 관련 교육 수료증으로 기술적 역량을 증명해야 한다.	
FV-GFS 03.03	작업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교육기록이 있어야 한다.	작업자는 자신에게 할당된 업무에 대한 역량을 증명해야 한다. 특히, 농업 화학물질, 소독제, 작물보호제, 기타 위험 물질, 장비의 조종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증거는 출석 기록, 수료증, 또는 자격증을 포함한다. 위탁사업자는 생산자로부터 교육을 받거나, 과거 교육 기록 또는 수료증을 통해 역량을 증명해야 한다.	Major Must
FV-GFS 03.04	모든 교육 활동의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정규 교육과 보충 교육 모두 보관해야 한다. 기준의 이행 및 우수 농업 관행과 관련된 교육 기록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날짜 및 기간 - 콘텐츠 - 강사 또는 교육기관 - 교육생의 이름(예: 참석자 명단) - 참석 증거(예: 교육생 서명)	Maj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FV-GFS 04	외부 위탁 활동(위탁사업자)		
FV-GFS 04.01	생산자는 외부에 위탁한 활동이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이 기준의 원칙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외부에 위탁한 공정 및/또는 위탁사업자의 이용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 생산자는 위탁사업자가 수행하는 활동을 감독하여 이 기준의 관련 원칙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위탁사업자를 하나 이상 이용하는 모든 활동과 시기에 적용된다. 관련 기준을 준수하였다는 증거는 평가(assessment)를 통해 수집되며, 인증기관 심사 시 제공한다. 이러한 평가가 생산자에 의해 수행된 경우, 관련 기준 준수의 증거가 있어야 하며, 위탁사업자는 이 기준과 관련된 경우 생산자가 수행하는 평가에 동의해야 한다. GLOBALG.A.P. 승인 인증기관은 위탁사업자를 평가할 수 있으며, 다음 정보가 포함된 적합성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평가 날짜 - 인증기관의 이름 - 인증심사원의 이름 - 위탁사업자 세부 정보 - 평가한 기준의 목록	Maj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GLOBALG.A.P. 사무국이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인증서는 기준 준수의 유효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FV-GFS 05	외부자원관리		
FV-GFS 05.01	식품안전과 관련된 자재 및 서비스의 사양과 절차를 갖춰야 한다.	식품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투입물 및 서비스 공급업체를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시행해야 한다. 이 절차는 다음을 포함한다: - 공급업체의 평가, 승인, 지속적인 모니터링 방법 - 비상 상황에서 자재 및 서비스가 여전히 적합한 사양으로 조달하는 방법 - 평가, 조사, 후속조치에 대한 기록 기준에 적합한 사양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 사양은 연 1회 검토하거나 변경이 발생하면 1년이 되기 전에라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 변경 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포장재에 대한 공급업체 사양(적용되는 경우) - 서비스 제공업체(해충 방제 계약자, 실험실 서비스 등)의 유효하고 적합한 자격증 또는 면허 - 고객 요구사항 설명 - 원자재에 대한 정의된 사양	Maj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비상 상황 또는 공급업체에게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의 대안도 갖춰야 한다.	
FV-GFS 05.02	현장 재고 관리를 위한 재고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재고 목록은 자재와 제품이 식품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며, 유통기한이 제한된 자재는 올바른 순서로 사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재고 목록에는 구매한 자재(작물보호제, 질산 암모늄 비료 등), 수확 전후의 활동(예: 염소 소독제), 세척제를 포함한다. 매월 업데이트는 필요하지 않지만, 재고 계산은 사용 또는 구매 후 한 달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재고 이동이 없는 달에는 재고를 갱신할 필요가 없다. 제품이 본사에 의해 배포되는 경우, 기록은 품질관리체계(QMS)에 의해 보관될 수 있다.	Major Must
FV-GFS 06	추적성		
FV-GFS 06.01	(해당하는 경우) 모든 등록제품은 생산 및 취급 농장까지 또는 농장으로부터 추적이 가능해야 한다.	문서화된 식별 및 추적 시스템을 통하여 등록제품을 등록농장 또는 공급업체, 또는 옵션2 생산자단체의 등록농장 또는 공급업체로 추적할 수 있어야 하고, 반대 방향으로 바이어로 추적할 수도 있어야 한다(유통의 앞단계 & 뒷단계).	Maj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수확에 관한 정보가 하나의 배치(batch) 또는 로트(lot)와 연계되어 생산 기록이나 특정 생산자의 농장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제품 취급에 관한 정보도 마찬가지이다. 추적 시스템은 연 1회 이상 검증해야 하며, 이것은 회수 및 철수를 실제로 시행하거나 모의로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검증할 수 있다.	
FV-GFS 07	병행소유		
FV-GFS 07.01	GLOBALG.A.P. 인증품을 식별하고, 인증되지 않은 제품과 구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GLOBALG.A.P. 인증품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비인증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Major Must
FV-GFS 07.02	병행소유로 등록할 경우, GLOBALG.A.P. 인증품에는 GLOBALG.A.P. 번호(GGN)를 표시해야 한다.	생산자가 병행소유(인증된 생산과정과 인증되지 않은 생산과정에서 생산된 제품을 동시에 소유하는 경우)로 등록할 경우, 최종 소비자용 인증품의 포장에는 GGN을 표시하여 비인증품과 구별해야 한다. 표시하는 GGN은 옵션2 생산자단체의 GGN, 생산자단체 구성원의 GGN, 두 GGN 모두, 또는 옵션1 개별 생산자의 GGN일 수 있다. GGN은 비인증품에 표시할 수 없다.	Major Must
FV-GFS 07.03	인증품과 비인증품을 구별하여 출하하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	제품이 인증 상태에 따라 올바르게 출하되었음을 확인하는 검증 절차를 문서화해야 한다.	Maj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FV-GFS 07.04	다양한 출처에서 구매한 제품을 식별해야 한다.	모든 등록제품에 대하여 인증품의 수량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가 문서화하여 기록해야 한다. 또한 다른 생산자나 거래업체로부터 구매한 비인증품도 파악해야 한다. 기록은 다음을 포함한다: - 제품 설명 - GLOBALG.A.P. 인증 상태 - 구매한 제품의 수량 - 공급자 세부 정보 - 해당되는 경우 GLOBALG.A.P. 인증서 사본 - 구매한 제품과 관련된 추적 데이터/코드 - 수령한 구매 주문서 및 거래명세표 - 승인된 공급업체 목록	Major Must
FV-GFS 08	매스밸런스		
FV-GFS 08.01	모든 등록제품의 판매량을 기록해야 한다.	모든 등록제품에 대해 인증품과 비인증품의 판매량을 제품의 정보와 함께 기록해야 한다. 기록을 통하여 인증품과 비인증품의 입고와 출고의 합계가 균형잡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Maj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FV-GFS 08.02	모든 제품에 대한 수량(생산, 저장, 구매)을 기록하고 요약하여야 한다.	수량(부피 또는 무게 등)은 모든 등록제품에 대해 기록 및 요약해야 하며, 여기에는 입고품(구매한 제품 포함), 출고품(불량품, 폐기물, 펄프 등 포함), 저장 제품(인증품과 비인증품)이 포함된다. 이러한 기록을 통하여 매스밸런스를 실시해야 하며, 증가·손실의 오차는 해당 산업계의 허용 범위에 들어가는지 검토해야 한다. 매스밸런스 검증의 빈도를 운영 규모에 적합하게 정의하며, 각 제품에 대해 최소한 연 1 회는 수행해야 한다. 매스밸런스를 증명할 문서는 명확하게 식별해야 한다. 만약 인증기관 심사가 수확 기간 동안 이루어진다면, 지난 해 수확의 매스밸런스 데이터를 검토할 수 있다. 이는 인증기관 심사 전에 준비해야 한다. 대량 제품(예컨대, 발떼기로 대량 판매하는 감자)이 수확 후 바로 구매자에게 인도되거나, 제품이 밭에서 바로 용기에 담겨 고객에게 발송되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N/A)"이 적용된다. 매스밸런스 미적용 사유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Maj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FV-GFS 09	제품 회수 및 철수		
FV-GFS 09.01	제품을 시장에서 리콜 및 회수하는 절차를 문서화하며, 이러한 절차를 매년 테스트해야 한다.	생산자는 다음과 같이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 리콜 및 회수를 유발할 수 있는 사건 유형 - 리콜 및 회수 결정을 내리는 책임자 - 공급망의 다음 단계에 통지하는 방법 - 필요시 관련 당국에 대한 통지 - 인증기관과의 연락 방법, 인증기관은 GLOBALG.A.P. 사무국에 연락할 수 있음 - 재고를 확인하고 조치하는 방법 이 절차가 효과적인지 매년 테스트하며, 모의 리콜의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예컨대, 로트를 하나 선택하여 고객을 추적해 보기). 모의 리콜에서 실제로 고객과의 연락은 필수 사항이 아니나, 최신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지난해에 실제 리콜 및 회수가 발생한 경우, 그것을 시행한 기록을 통해 이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	Maj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FV-GFS 10	문제제기		
FV-GFS 10.01	기준에 관련된 내부 및 외부의 문제제기 처리 절차를 갖추고 시행해야 한다.	문제제기 처리 절차를 문서화하며, 기준에 의해 다루어지는 문제와 관련된 모든 문제제기를 기록하고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문제제기에 대해 취해진 조치도 기록해야 한다. 생산자가 관계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거나 인증 범위 내에서 제재를 받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생산자가 인증기관을 통해 GLOBALG.A.P. 사무국에 통보하는 절차가 문제제기 처리 절차가 있어야 한다. 식품안전, 작업자의 복지, 환경보전 등 기준과 관련된 문제제기가 GLOBALG.A.P. 브랜드의 명성과 신뢰성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 인증서 소유자는 인증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생산자단체의 경우, 구성원들이 완벽한 문제제기 처리 절차를 갖출 필요는 없고, 자신에게 관련된 부분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작업자는 기준에서 다루는 주제에 대해 고용주에게 문제제기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문제제기는 문서화되고 인증서 소유자가 처리해야 한다.	Maj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FV-GFS 10.02	작업자에게 기준과 관련된 문제제기의 권리가 있음을 알게 하여야 하며,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익명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고 시행 가능해야 한다.	고용주는 작업자에게 기준과 관련된 일반적 · 법적 권리와 문제제기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주로 사용하는 언어로 전달해야 한다.(이러한 설명은 작업자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하고 그림 또는 상징을 포함할 수 있다.) 생산자는 문제제기와 청구 사항을 농장의 규모, 작업자의 유형, 작업 환경에 맞게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춰야 한다. 이 절차는 기밀을 유지하고 사용이 간단해야 하며, 작업자가 농장에 있는 동안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설명(예: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제출 방법,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이 설명은 주요 작업자 언어로 작성한 그림 문자나 표지로 구성해야 한다. 문제제기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고 검토해야 한다.	Major Must
FV-GFS 11	부적합 제품		
FV-GFS 11.01	부적합 제품을 관리하고 처리하기 위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	취급중단-해제 절차가 포함된 절차를 문서화해야 한다. 부적합 제품의 의도치 않은 사용 또는 유통을 방지해야 한다. 부적합 제품이란 식품안전, 품질, 잔류허용기준 초과, 교차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한 제품 등을 말한다. 부적합 제품은 생산 및 취급 중에 식별되어야 하며, 분리되어 적절하게 처리되거나 적합한 다른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다(가공, 동물 사료 등). 재활용하지 않을 경우, 제품은 적절하게 폐기해야 한다.	Maj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또한, 부적합 제품 절차는 위험평가에 따라 바닥에 떨어진 제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나타내야 한다. 식품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제품은 수확하지 않거나 폐기해야 한다. 폐기물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하게 지정된 구역에 보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폐기물을 식별하기 위한 표지판을 사용해야 한다. 이 구역은 청소 일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해야 한다. 근본 원인이 중대한 식품안전상의 사유와 관련된 경우, 시정조치의 결정과 이행을 위하여 마련된 절차를 실행하고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부적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FV-GFS 12	시험분석		
FV-GFS 12.01	시험분석은 산업계의 준수 사항과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분석하는 실험실은 ISO/IEC 17025 요구 사항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을 문서로 증명해야 한다. 분석은 수질, 잔류농약, 환경 모니터링, 생물학적 · 화학적 · 물리적 오염, 그 외 모든 관련 테스트를 포함한다. 실험실은 숙련도 검증 또는 그에 대한 인증 프로그램(예컨대, FAPAS®)을 통해 시험분석의 역량을 증명해야 한다.	Maj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FV-GFS 13	장비와 설비		
FV-GFS 13.01	장비, 도구, 및 기기는 목적에 적합하며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제품과 접촉하는 장비, 도구, 및 기기는 제품과의 접촉에 안전한 재료(비독성)로 만들어져야 하며, 세척, 소독,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고 제작되어 오염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장비, 도구, 및 기기(저울, 작물보호제 또는 비료 살포 장비, 온도계, pH 미터 등)를 식별하고 유지 관리하며,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되는 경우 최소 연 1회 이상 교정해야 한다. 교정은 국가 표준 또는 국제 표준에 따라야 한다. 장비 유지보수, 교정(해당되는 경우), 및 수리에 대한 작업을 문서화해야 한다. 유지보수 활동은 식품안전, 환경 또는 작업자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작물보호제 살포기: 작물보호제 살포기(자동 및 비자동)는 지난 12개월 이내에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검증 · 교정해야 하며, 이 검증은 인증이나 문서를 통하여 공식 제도에 참여하거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수행하였음을 증명해야 한다. 관개/관비 장비: 모든 관개/관비 장비/관비기술에 대해 연 1회 이상 유지보수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Maj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FV-GFS 13.02	장비는 제품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관해야 한다.	장비(작물보호제 또는 비료 살포 장비, 수확 장비, 포장 기계 등)는 제품 또는 수확한 식용 부분에 오염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Major Must
FV-GFS 13.03	수확하는 제품의 적재, 운송, 또는 보관에 사용하는 차량과 장비를 사용에 적합하도록 청소하고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수확한 제품을 적재, 운송, 보관하는 차량과 장비를 청소하고 유지보수하여, 제품 오염(동물의 분뇨, 연료 유출 등)을 방지하도록 보관해야 한다. 차량과 장비는 용도에 적합해야 하며, 식품안전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보관해야 한다.	Major Must
FV-GFS 14	식품안전방침		
FV-GFS 14.01	생산자는 식품안전방침 동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한다.	생산자의 식품안전방침 동의서는 다음을 포함한다: - 의사소통, 교육, 작업자의 피드백, 그리고 측정 가능한 식품안전 목표로 구성된 식품안전 문화의 준수 - 식품안전에 담당하는 생산자/관리자의 서명 (매년 갱신) -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명시 - 중장기 개선, 식품안전 문화, 관련자원의 제공, 관련 법규 준수 - 모든 식품안전 시스템 요소에 대한 경영진의 검토가 매년 또는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문서 - 자가 평가 체크리스트(옵션 1의 개별 생산자의 경우)를 작성	Maj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 옵션 2 생산자단체 구성원 및 품질관리체계(QMS)을 보유한 옵션 1 여러 농장의 생산자를 대표하여 본사 또는 QMS 수준에서 작성	
FV-GFS 15	식품보안		
FV-GFS 15.01	악의적인 공격이나 오염과 관련된 위험을 처리하기 위한 식품 방어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해당 시스템은 다음을 포함한다: - 고의적인 오염이나 피해를 가하려는 시도로부터의 위험을 고려하여, 제품 안전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을 식별하는 위험평가 - 위험평가에서 식별된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명시한 문서화된 식품 방어 계획 - 시설 및 제품의 변조 식별, 외부 저장 및 반입 지점의 모니터링, 관련된 경우 출입 통제, 안전한 출처에서의 투입물 수령, 모든 직원 및 위탁사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고려 - 작업자, 방문자, 위탁사업자가 식품 방어 조치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교육, 표지판, 그림 문자 등을 통해 이를 보장	Major Must
FV-GFS 16	식품기만		
FV-GFS 16.01	식품기만에 관한 위험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해당 시스템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사기성 또는 불순물이 섞인 자재로 인한 위험을 고려하여, 제품 안전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는 위험평가	Maj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 위험평가에서 식별된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명시한 문서화된 식품기만 방지 계획 -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부정확한 정보와 관련된 잠재적 영향을 고려 - 해당되는 경우, 위조된 작물보호제, 승인되지 않은 종묘, 포장재의 출처, 승인된 공급업체 사용, 포장재 접근 통제와 관련된 위험을 고려	
FV-GFS 17	로고 사용		
FV-GFS 17.01	GLOBALG.A.P. 단어, 상표, QR 코드 또는 로고, 그리고 GLOBALG.A.P. 번호(GGN)는 "GLOBALG.A.P. 상표 사용: 정책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생산자는 "GLOBALG.A.P. 상표 사용: 정책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GLOBALG.A.P. 단어, 상표, QR 코드 또는 로고, 그리고 GGN, GLN(글로벌갭 위치번호, Global Location Number), 또는 하위 GLN을 사용해야 한다. GLOBALG.A.P. 단어, 상표, 또는 로고를 최종 제품, 소비자 포장, 또는 판매 지점에 절대로 표시할 수 없다. 그러나 인증서 소유자는 사업자 간 소통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생산자는 인증기관의 최초 심사 중에 GLOBALG.A.P. 단어, 상표, 또는 로고를 사용할 수 없으며, 첫 번째 긍정적인 인증 결정이 있기 전까지 GLOBALG.A.P. 인증 상태를 언급할 수 없다.	Maj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FV-GFS 18	GLOBALG.A.P. 인증 상태		
FV-GFS 18.01	거래 문서에 GLOBALG.A.P. 상태와 GLOBALG.A.P. 번호(GGN)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생산 과정에서 유래한 자재 및 제품의 판매와 관련된 배송 증명서, 판매 송장 및 기타 관련 문서에 인증서 소유자의 GGN과 GLOBALG.A.P. 인증 상태를 기재해야 한다. 이는 내부 문서에서는 필수가 아니다. 생산자가 GLN(글로벌갭 위치번호, Global Location Number)를 보유한 경우, 이는 등록 과정에서 GLOBALG.A.P. 사무국에서 발급한 GGN을 대체한다. 거래 문서에서는 인증 상태를 명확히 식별하는 것이 충분하며, 예를 들어 “GLOBALG.A.P. 인증 [제품명]”과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인증되지 않은 생산 과정에서 유래한 제품은 "비인증"으로 식별할 필요는 없다. 인증된 생산 과정에서 유래한 제품이 그 상태로 판매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인증 상태를 필수로 표시해야 한다. 이는 최초(처음) 인증기관 심사 동안 확인할 수 없으며, 첫 번째 긍정적인 인증 결정 전에는 생산자가 GLOBALG.A.P. 인증 상태를 언급할 수 없다. 모든 출하품이 인증된 생산 과정에서 유래한 제품만 포함된다는 내용을 담은 최신의 문서화된 양자 간 계약이 인증서 소유자와 직접 구매자 간에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없음(N/A)”을 적용할 수 있다.	Maj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FV-GFS 19	위생		
FV-GFS 19.01	농장은 문서화된 위생 위험평가를 보유해야 한다.	문서화된 위생 위험평가는 생산, 수확, 및 취급을 다루며, 다음을 포함한다: - 투입 자재와 생산과정에 관련된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 오염물, 체액 유출(구토, 출혈 등), 전염성 질병 - 작업자, 개인 소지품, 장비, 의류, 포장재, 운송, 차량, 제품 보관(농장에서의 단기 보관 포함) - 교차 오염 방지와 식품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생산 환경의 설계 및 배치 - 청소 및 위생 활동의 측정과 모니터링	Major Must
FV-GFS 19.02	식품안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문서화된 위생 절차를 갖춰야 한다.	위생 절차는 위험평가에 기반해야 하며, 수확 및 수확 후 활동을 포함해야 한다. 작업자, 방문자, 위탁사업자를 위한 적절한 위생 조치를 설명하는 그림 문자 또는 표지판이 작업자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보호 장구 및 의류(작업복, 앞치마, 소매, 장갑, 신발 등)가 필요할 경우, 고용주가 이를 제공해야 하며, 청소, 유지보수, 보관은 식품안전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손은 오염원이 될 수 있는 경우, 작업 시작 전이나 화장실 이용 후를 포함하여 반드시 씻어야 한다.	Maj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위생 절차는 체액으로 인한 제품 오염, 아픈 사람의 보고 요구 사항(구토, 황달, 설사 등), 병든 사람이 제품과 접촉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그리고 작업복귀 방침을 다루어야 한다. 피부 상처는 적절하게 덮고, 필요한 경우 장갑을 사용해야 한다. 위생 절차 위반이 없음을 시각적 증거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FV-GFS 19.03	농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본 위생 교육은 다음을 포함한다. - 농장에서 일하는 모든 작업자, 소유주 및 관리자에게 매년 제공해야 한다. - 모든 신규 작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필요한 모든 지침을 포함해야 한다. -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서면, 구두, 그림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 특히 수확 및 제품 취급 활동에 대한 위생 절차 교육이 필요하다(해당되는 경우).	Major Must
FV-GFS 19.04	흡연, 식사, 껌 씹기, 음주는 지정된 구역에서만 허용된다.	제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흡연, 식사, 껌 씹기, 음주는 지정된 구역에서만 허용되며, 위생 위험평가에 따라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제품 취급 또는 보관 구역에서는 금지한다. 물을 마시는 것은 예외이다.	Maj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FV-GFS 19.05	작업장 근처에 작업자, 방문자, 위탁사업자를 위한 깨끗한 화장실을 제공해야 한다.	생산 및 취급 활동을 위한 화장실(고정식 또는 이동식 화장실 포함)은 다음을 충족한다: - 제품 오염의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위치해야 한다. - 청소와 유지보수가 용이한 재질로 만들어져야 하며(이 기준은 구덩이 화장실에도 적용된다). -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 - 작업 장소와 합리적인 거리 내에 위치해야 하며, 도보로 접근하거나 쉽게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생산 및 취급이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시설의 화장실은 문이 자동으로 닫히지 않는 한, 출입문이 생산 및 제품 취급 구역과 직접 연결되지 않아야 한다. 화장실은 적절하게 청소, 유지보수되고 비품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해당되는 경우 방문자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Major Must
FV-GFS 19.06	제품과 직접 접촉하는 모든 작업자, 방문자, 및 위탁사업자를 위해 손 씻기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손 씻기 시설은 작업자가 손이 오염원이 될 수 있는 경우 언제든지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하고 청결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이 시설은 교차 오염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화장실과 가능한 가까운 위치에 있어야 한다.	Maj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모든 손 씻기 시설에는 무취의 비누와 손을 건조할 수 있는 수단이 갖추어져야 한다. 되도록 일회용 수건을 사용해야 하며, 섬유 수건이 교차 오염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에어 타월과 강제 공기식 핸드 드라이어도 포함한다. 손 씻기에 사용되는 물은 수질을 분석하여야 하며, 수질과 관련된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 사용되는 물은 항상 음용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손 씻는 물이 음용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손을 씻은 후 손 소독제(예: 알코올 기반 젤)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손을 씻지 않고 손 소독제만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FV-GFS 19.07	제품 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동물 활동을 관리해야 한다.	생산 구역 내에서 동물로 인한 제품 오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품 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동물 활동의 증거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야생 동물을 제거하거나 생산 구역에서 모든 동물을 없애기 위한 파괴적인 방법은 적절한 조치로 간주되지 않는다.	Major Must
FV-GFS 19.08	생산 및 수확에 사용되는 용기는 청결하게 유지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며, 사용에 적합해야 한다.	생산 및 수확 용기는 식품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비독성의 재료로 만들어져야 하며, 청소와 유지보수가 용이해야 한다.	Maj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재사용 가능한 용기는 사용 전에 깨끗해야 하며, 위생 위험평가에 따라 세척 빈도와 일정을 문서화해야 한다. 위생 위험평가에 따라 필요한 경우 소독을 청소 절차에 포함해야 한다. 수확 용기는 제품 전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화학물질, 윤활유, 기름, 쓰레기, 도구 등의 보관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FV-GFS 20	작업자 건강 · 안전 · 복지		
FV-GFS 20.01	위험평가와 교육		
FV-GFS 20.01.01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문서화된 위험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문서화된 위험평가는 농장의 조건을 반영해야 하며, 작업 시설과 농장 내 작업자 주거 시설을 포함해야 한다. 위험평가는 매년 또는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발생할 때(새로운 기계, 새로운 작물보호제, 수정된 재배 방식, 새로운 건강 위험 등) 검토 및 업데이트해야 한다. 사고와 사건은 기록해야 한다. 위험 요소의 예로는 움직이는 기계 부품, 전기, 차량 통행, 인화성 물질, 비료, 화학물질 노출, 과도한 소음, 먼지, 진동, 극한 온도, 사다리, 연료 저장 등을 포함할 수 있다.	Maj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FV-GFS 20.01.02	농장은 건강 및 안전 절차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건강 및 안전 절차는 위험평가에서 확인된 사항들을 다루어야 하며, 농장 운영에 적합해야 한다. 이 절차는 매년 검토되고, 위험평가가 변경될 때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농장 인프라, 시설, 농장 내 작업자 숙소, 장비는 작업자의 건강 및 안전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사고 및 응급 절차는 작업 구역, 작업자 시설, 농장 내 작업자 주택을 다루어야 하며, 비상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 예컨대, 작업자가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된다. 위험평가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응급 장비는 접근 가능하고 유지되어야 한다. 더 큰 리스크에 있는 작업자에 집중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원인을 검토하고, 적절한 예방 조치를 개정된 건강 및 안전 절차에 포함해야 한다.	Major Must
FV-GFS 20.01.03	모든 직원은 위험평가에 따라 건강 및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작업자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기본 교육은 다음을 포함한다: - 직원, 소유주 및 관리자를 포함하여 매년 제공해야 한다. - 신규 직원과 추가 지식이 필요한 업무로 재배치되는 기존 직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 필요한 모든 지침을 포함해야 한다. - 서면 또는 구두 형식으로 제공되며, 적절한 경우 서면 설명 없이 구두 및 그림 형식으로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Maj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 장비, 제품 또는 새로운 활동에 대한 안전 절차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 사고 대응, 자연재해, 작업자의 건강, 질병, 화학물질 노출, 응급 대응 절차, 화재 안전, 작업자의 건강 보호와 관련된 권리와 책임에 대한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FV-GFS 20.02	위해요소 및 응급처치		
FV-GFS 20.02.01	사고 및 응급 절차를 게시하고 전달해야 한다.	사고 및 응급 절차에 기반한 지침은 작업자, 방문자, 위탁사업자가 접근 가능하고 잘 보이는 위치에 명확하게 게시해야 한다. 이러한 지침은 작업자가 사용하는 언어 또는 그림 문자로 제공해야 한다. 절차는 다음을 포함하고 식별해야 한다: - 농장의 주소, 지도 또는 위치 정보(GPS 좌표 등) - 연락 담당자 - 경찰, 구급차, 병원, 소방서, 현장에서의 응급 의료 서비스 또는 운송 수단, 전기, 물, 가스 공급업체의 최신 연락처 목록 - 해당되는 경우, 비상 대피 절차 영구적이고 읽기 쉬운 표지판은 잠재적 위험 요소를 나타내야 한다. 비상구와 탈출 경로 표지판은 항상 열려 있고, 접근 가능하며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여기에는 폐기물	Maj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구덩이, 인화성 구조물(연료 탱크, 프로판/천연가스 탱크 등), 작물보호제 저장소, 수역 및 기타 식별된 물리적 위험을 포함한다. 경고 표지판은 주요 작업자 언어 또는 그림 문자로 표시해야 한다. 추가로 포함될 수 있는 정보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가장 가까운 통신 수단(전화, 라디오)의 위치 - 지역 의료 서비스, 병원, 기타 응급 서비스와 연락하는 방법 - 소화기 위치 및 근처의 물 공급 여부 - 대형 화학물질, 연료, 비료 저장소 위치 - 비상구와 화재 탈출구 작동 위치 - 전기, 가스, 물 라인의 비상 차단기 위치 - 사고 및 위험한 사건을 보고하는 방법(위치, 사건 설명, 부상자 수, 부상 유형)	
FV-GFS 20.02.02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안전 지침은 즉시 제공되고 접근 가능해야 한다.	각 위험 물질의 안전한 취급에 관련된 정보는 접근 가능해야 하며(웹사이트, 전화번호, 물질안전보건자료(SDS) 등), 작업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Minor Must
FV-GFS 20.02.03	구급함은 모든 상시 작업 장소와 작업이 이루어지는 가까운 필지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완비되고 유지 관리된 구급함(현행 규정에 따라 완비되고 유지되며, 수행되는 활동에 적합한 키트)는 모든 상시 작업 장소에서 제공되고 접근 가능해야 하며, 위험평가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선택된 차량(트랙터, 자동차 등)에도 구비해야 한다.	Min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FV-GFS 20.02.04	농장 내에서 활동이 이루어질 때마다 항상 응급 처치 교육을 받은 안전요원이 최소 한 명 이상 현장에 있어야 한다.	생산 및 취급 활동이 이루어질 때마다, 최근 5 년 이내에 응급 처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최소 한 명 이상 해당 장소에 있어야 한다. 50 명당 한 명의 응급 처치 교육을 받은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	Minor Must
FV-GFS 20.03	개인 보호 장구		
FV-GFS 20.03.01	작업자, 방문자 및 위탁사업자는 적절한 개인 보호 장구(PPE)를 갖추어야 한다.	개인 보호 장구는 법적 요구 사항, 라벨 지침 및 관할 당국의 승인에 따라야 한다. PPE는 사용 가능하고 적절하게 사용되며 수리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위험평가에 따라 적절한 신발, 방수 의복, 보호 작업복, 고무 장갑, 안면 마스크, 호흡기 장비(교체 필터 포함), 귀 및 눈 보호구 사용 등을 포함할 수 있다. PPE는 작업자, 위탁사업자(위탁사업자가 직접 구비하는 장비도 가능) 및 방문자에게 필요할 때마다 제공해야 한다.	Major Must
FV-GFS 20.03.02	개인 보호 장구(PPE)는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고 오염될 위험이 없도록 적절하게 보관해야 한다.	PPE는 사용 유형과 잠재적 오염 정도에 따라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보호복은 개인 물품과 분리하여 세탁해야 한다. 더럽고 손상된 PPE는 적절하게 폐기해야 한다. PPE는 화학 물질과의 교차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보관해야 한다.	Maj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FV-GFS 20.03.03	작업자가 개인 보호 장구(PPE)를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PPE를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1회용 PPE를 사용할 경우, 작업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양이 조달되어 재입고 되었음을 증명하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	Minor Must
FV-GFS 20.03.04	필요 시, 환복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탈의 시설(현지 상황에 따라)은 필요에 따라 의복과 보호용 걸옷을 환복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기존 의복 위에 개인 보호 장구(PPE)를 사용하는 경우 환복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Minor Must
FV-GFS 20.04	작업자의 복지		
FV-GFS 20.04.01	건강 · 안전 · 복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경영진과 작업자 사이에 의사 소통이 있어야 한다.	건강 · 안전 · 복지 문제에 대한 경영진과 작업자 간의 의사 소통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위험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의사 소통은 회의, 긴급 번호, 익명의 신문고, 일일 사전 작업 브리핑 또는 개별 회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매우 작은 규모의 작업에서는 가족 또는 제한된 수의 작업자 간의 의사소통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Minor Must
FV-GFS 20.04.02	작업자는 깨끗한 식수, 식품 저장고, 식사 및 휴식 공간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작업자가 농장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깨끗한 음식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와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식수는 항상 작업자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Maj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식수에 대한 작업자의 접근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휴식을 위한 지정된 장소가 있어야 한다.	
FV-GFS 20.04.03	기숙시설은 해당 지방의 규정을 준수하고 기본 서비스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작업자를 위한 기숙시설은 거주 가능하여야 하며 지붕, 창문 및 출입문이 견고하여야 하며, 위생적이고 안전한 조리 공간 및 식수, 화장실, 배수로 등 기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배수구가 없는 경우, 지방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재래식 화장실을 허용할 수 있다.	Major Must
FV-GFS 20.04.04	작업자를 태우는 운송수단은 안전해야 한다.	차량은 작업자에게 안전해야 하며 안전 요건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Minor Must
FV-GFS 21	농장 입지		
FV-GFS 21.01	등록된 모든 생산지에 대해 문서화된 위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위험평가는: - 시설물을 포함한 모든 생산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 매년 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 실시한다(새로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장소 또는 작물이 생산에 도입되는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생물학적, 물리적, 화학적 위험(알레르기 물질 포함) - 인접한 구역에서 유래한 미생물 교차 오염의 위험	Maj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 토지 이용의 이력(최소 1년, 5년 권장) - 인접한 농장이 미치는 영향	
FV-GFS 21.02	위험평가에서 파악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포함하여, 농장의 입지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관리 계획은 다음을 포함한다. - 위험평가(매년 또는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에 따라 검토하고 위험평가에서 확인된 모든 위험을 처리한다. - 확인된 위험에 대해 관리 조치를 설명한다. - 농장 운영에 적합해야 한다. - 시설 설계, 청소 활동, 해충 방제 등 식품안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 작업의 레이아웃과 흐름이 의도한 목적에 적합하고 적용 가능한 구조를 고려하며 식품안전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 효과적이고 가시적으로 구현해야 한다.	Major Must
FV-GFS 21.03	생산자는 생산에 사용되는 필지와 시설을 식별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생산자는 다음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각종 밭, 과수원, 포도원, 온실 및 기타 생산지 - 용수원, 창고 및 취급 시설, 농약 보관소, 텃밭, 건축물, 그밖에 작업자의 건강 및 안전, 식품안전 또는 환경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각종 구역들 지도나 현장의 표지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Maj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FV-GFS 21.04	현장은 깔끔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식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현장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생산 현장 또는 저장소의 바로 근처에 폐기물이나 쓰레기가 없어야 한다. 업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럼, 부수적이고 사소한 쓰레기 및 폐기물은 지정된 구역에서만 허용한다. 연료의 누설을 포함하여 다른 모든 폐기물은 청소해야 한다.	Major Must
FV-GFS 21.05	(생산자가 관리할 책임은 그의 농장뿐일지라도) 농장을 인접한 경관과 상호작용하는 농업생태계로서 관리해야 한다.	증거는 다음을 포함한다. - 농장 내 물의 유입과 배출 - 농장의 서식지와 농장 밖의 환경을 연결하는 비오톱 통로(예: 나무) - 프로젝트 참여, 공동 활동, 다른 생산자 또는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분야별 또는 작물별 계획 파악	Recom.
FV-GFS 21.06	작업 중, 알레르기 물질을 처리하거나 저장하는 경우, 문서화된 알레르기 물질 관리 프로그램이 갖춰야 한다.	사용되고, 저장되고, 취급되는 알레르기 물질들은 프로그램에 따라 목록으로 관리해야 한다. 해당되는 경우, 위험평가를 기반으로 알레르기 물질을 분리하여 보관, 취급, 적재 및 운송하여야 한다. 알레르기 물질을 의도적으로 또는 잠재적으로 포함하는 모든 식품은 생산 국가 및 수입 국가의 알레르기 표시 규정에 따라 표시되어야 한다.	Maj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FV-GFS 22	생물다양성 및 생물서식지		
FV-GFS 22.01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 관리		
FV-GFS 22.01.01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계획서가 있어야 한다.	농장에 대한 문서화된 생물다양성 계획이 있어야 한다. 농장에 맞게 구체화한 일반 계획이어도 된다. 이 생물다양성 계획은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 현지의 규정을 고려하고 계획 내용을 농장의 현실(예: 노지, 온실, 수직 농법 등)에 맞게 조정한다. - 최소한 다음 항목을 포함한다. 기준치: 생물다양성의 초기 상황 대책: 기준치를 기반으로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방법 모니터링: 조치 이행 현황 조정: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조치 구체화 - 생산자의 법적 범위가 농장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농장 밖의 상황을 고려하고 비공식적인 협업, 공식 프로젝트, 부문 및 네트워크 계획 등을 통해 다른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조치를 이행하도록 장려한다. 생물다양성 보호와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을 참조할 수 있다. 옵션2 생산자단체는 품질관리체계(QMS)에 해당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개별생산자의 것을 갈음한다.	Min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FV-GFS 22.01.02	생물다양성이 보호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계획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예를 들어 다음 사항 또는 기타 유사한 사항 중 하나 이상을 통해 이행되어야 한다. - 해충종합관리(IPM) - 야간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인공 조명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예를 들어, 철새나 다른 야행성 생물의 다양성에 대한 영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스크린이나 페인팅된 유리) - 휴경 - 유익한 포식자들을 위한 서식처 만들기 - 들판이나 온실 근처의 서식처 남겨두기 - 수생태계를 따라 생산지역 사이에 완충지대를 만들거나 기타 수변공간 관리 - 윤작, 무경운 · 최소경운, 침식 방지 및 기타 토양 관리를 통해 토양 건강 및 토양 생물 다양성 증진 - 농약 및 비료 사용을 최적화하고 가능한 경우 사용량 줄이기 - 생물 종 보호를 위한 조치 생물다양성 보호와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을 참조할 수 있다. 옵션2 생산자단체는 품질관리체계(QMS)에 해당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개별생산자의 것을 갈음한다.	Min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FV-GFS 22.01.03	생물다양성 보호 및 강화 활동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지도, 항공 사진, 농장 내 시각적 증거, 지역 또는 국가 당국 또는 공인 서비스 제공자가 발행한 문서 등은 다음 중 한개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1) 다음과 같은 크기의 조각 복원, 개선 또는 확대: 1-1) 산림, 습지, 맹그로브, 초원, 이탄습지 등 1-2) 법적 보호가 있는 지역 또는 다른 수단에 의해 효과적으로 보호되는 지역(예: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관련 카테고리인 보호지역) 1-3) “높은 보존 가치”(HCV) 지역으로 인정되는 지역 2) 침입외래종 회피 또는 관리 3) 기타 생산자 또는 파트너의 조치 생물다양성 보호와 관련하여 지침은 참조 내용을 제공합니다. 옵션2 생산자단체는 품질관리체계(QMS)에 해당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개별생산자의 것을 갈음한다.	Recom.
FV-GFS 22.02	비생산지의 생태 개선		
FV-GFS 22.02.01	비생산지를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한 생태지역으로 사용해야 한다.	비생산지(예: 저지대 습지, 임야, 꽃 또는 척박한 토양 지역 등)에 대한 생물 다양성 계획을 세우고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거나 확대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생물다양성에 관련한 세 가지 기준에 적용된 증거를 이 기준에도 적용할 수 있다(농장 내 비생산적인 현장에 적용될 경우).	Recom.

구분	원칙	기준	수준
FV-GFS 22.03	자연생태계와 서식지는 농업 지역으로 전환하지 않음		
FV-GFS 22.03.01	2014년 1월 1일 이후에는 법적으로 보존 가치가 인정된 지역(또는 다른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보호되는 지역)을 농업 생산 또는 기타 용도로 전환할 수 없다.	지도, 항공 사진, 지역 또는 국가 당국이나 공인 서비스 제공자가 발행한 문서 등의 증거를 통해, 2014년 1월 1일 이후 농장 일부(농장 경계 내) 중 다음 특성을 갖는 지역이 농업 지역 또는 다른 용도로 전환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법적 보호로 용도 전환이 금지된 지역(국가 또는 지역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보호 지역,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관련 카테고리가 있는 지역, 기타 효과적인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지역 등)	Major Must
FV-GFS 22.03.02	2008년 1월 1일부터 2014년 1월 1일 사이에 법적으로 보존 가치가 인정된 지역(또는 다른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보호되는 지역)이 농업 생산 또는 기타 용도로 전환된 경우, 복원하였거나 복원 중이거나, 구속력 있는 복원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도, 항공 사진, 지역 또는 국가 당국이나 공인 서비스 제공자가 발행한 문서 등의 증거를 통해, 농장 일부(농장 경계 내) 중 다음 특성을 갖는 지역이 2008년 1월 1일부터 2014년 1월 1일 사이에 농업 지역 또는 다른 용도로 전환된 경우, 그 전체 면적을 되살리는 복원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구속력 있는 이행을 위해 계획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법적 보호로 용도 전환이 금지된 지역(국가 또는 지역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보호 지역,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관련 카테고리가 있는 지역, 기타 효과적인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지역 등)	Maj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FV-GFS 22.03.03	생물다양성은 메트릭스(정량지표)를 통해 관리한다.	- 메트릭스(정량지표)를 통해 최소한 다음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 자연 또는 반자연 생태계 및 서식지의 총 면적(ha 또는 m2), 법적으로 인정된 보호 지역 또는 기타 수단으로 효과적으로 보호되는 지역(인증기관 심사 연도의 1월 1일 기준) - 2008년 1월 1일부터 2014년 1월 1일 사이에 농업용 또는 기타 용도로 전환된 총 면적(ha 또는 m2) (인증기관 심사 연도의 1월 1일) - 이미 복원된 전체 면적(ha 또는 m2)(인증기관 심사 연도의 1월 1일 기준) - 복원 중인 전체 면적(ha 또는 m2)(인증기관 심사 연도의 1월 1일 기준) - 구속력 있는 복원을 위해 계획된 총 면적(ha 또는 m2)(인증기관 심사 연도의 1월 1일 기준) 해당되는 경우, 추가적인 생물다양성 측면 및 지표도 계산할 수 있다. 옵션2 생산자단체는 품질관리체계(QMS)에 해당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개별생산자의 것을 갈음한다. 생산자 단체 및 개별농장에서 측정한 결과(데이터)는 활용가능해야 한다.	Recom.

구분	원칙	기준	수준
FV-GFS 23	에너지 효율		
FV-GFS 23.01	농장에서 사용한 에너지를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농장 에너지 사용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예: 에너지 소비에 대한 청구서). 생산자(또는 해당되는 경우 품질관리체계(QMS) 관리자)는 농장에서 그리고 농업을 통해 에너지가 어디에서 어떻게 소비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적산 전력계가 없는 경우(예: 소규모 생산자의 경우) 추정이 허용된다. 옵션2 생산자단체는 품질관리체계(QMS)에 해당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개별생산자의 것을 갈음한다.	Major Must
FV-GFS 23.02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농장 내 에너지효율 향상계획을 세워야 한다.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문서화된 계획이 있어야 한다. 이 계획은 생산자의 현실을 감안하여 다년간의 계획이 될 수 있다.	Minor Must
FV-GFS 23.03	에너지효율 향상계획에는 재생불가능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생산자는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대신 재생 에너지를 고려해야 한다.	Minor Must
FV-GFS 23.04	에너지는 메트릭스(정량지표)를 통해 관리한다.	메트릭스(정량지표)를 통하여 다음 사항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 각 에너지원/월별 농장의 총 에너지 사용량 - 에너지원에서 재생에너지와 비재생에너지의 비율 추가 계산으로 다음 사항이 포함할 수 있다.	Recom.

구분	원칙	기준	수준
		- 농장으로 수입되는 에너지의 양(예: 그리드에서) - 생산자가 생성한 에너지의 양(예: 태양광 패널, 연료 포함) - 내보낸 에너지의 양(예: 그리드로) 메트릭스(정량지표)는 에너지원, 농장의 다양한 생산 현장, 경작지 면적, 시간 단위(예: 성장 주기), 비재생 및 재생 에너지 자원, 제품의 kg당 에너지 양 및 생산량 또는 제품의 kg당 나열된 양을 반영해야 한다. 옵션2 생산자단체는 품질관리체계(QMS)에 해당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개별생산자의 것을 갈음한다. 생산자 단체 및 개별농장의 메트릭스(정량지표)에 대한 결과(데이터)는 활용가능해야 한다.	
FV-GFS 24	온실가스와 기후변화		
FV-GFS 24.01	GHG* 배출량을 줄이고 대기중에서 이를 제거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온실가스(GHG) 배출량은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불소화 가스를 의미. 지구 온난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으로 CO₂ 당량 (CO₂ e)으로 계산하기도함	생산자는 농장 내 활동이 에너지, 토양 건강, 비료 및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대기에서 제거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갖춰야 한다. 옵션2 생산자단체는 품질관리체계(QMS)에 해당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개별생산자의 것을 갈음한다.	Recom.

구분	원칙	기준	수준
FV-GFS 24.02	토양과 생물량에서 유기 탄소를 형성해야 한다.	생산자는 토양과 생산량에서 유기 탄소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농업을 시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거나 이미 시행하고 있음을 나타내야 한다. 예시는 다음과 같다, - 농작물 잔류물 관리(잔류물 매립, 잔류물 파종) - 작물 윤작, 작물 윤작 다양화, 최소 경작 또는 무경작 시 피복 작물 사용 - 비료 관리 시 양분 방출 감소 - 생태계 복원 - 탄소 농업 및 토양 및 생산량의 탄소 포집 옵션2 생산자단체는 품질관리체계(QMS)에 해당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개별생산자의 것을 갈음한다.	Recom.
FV-GFS 24.03	대기에서 온실가스(GHG)를 줄이거나 제거하는 작업은 메트릭스(정량지표)를 통해 관리한다.	메트릭스(정량지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농장에서 사용하는 총 에너지 양의 GHG 등가물(CO₂e/ha/월 및 CO₂e/kg/월). 추가적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농장과 관계된 기타 에너지 양의 GHG 등가 - 토양 및 생물량, 탄소농업 또는 환경발자국과 관련된 GHG 등가	Recom.

구분	원칙	기준	수준
		메트릭스(정량지표)는 농장의 다양한 생산 현장, 시간 단위(예: 성장 주기), 식품 kg 및 생산 ha당 GHG를 참조해야 한다. 옵션2 생산자단체는 품질관리체계(QMS)에 해당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개별생산자의 것을 갈음한다. 생산자 단체 및 개별농장의 메트릭스에 대한 결과(데이터)는 적합 여부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FV-GFS 25	폐기물		
FV-GFS 25.01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시행해야 한다.	식품 또는 환경(공기, 토양, 배지 및 물)의 잠재적 오염을 처리하는 폐기물 관리 시스템은 다음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 문서화 및 최신 상태로 유지 - 해당되는 경우, 작물보호제, 비료, 폐수, 배수 및 포장재를 포함한 폐기물의 수집, 저장 및 처리 - 용수원, 도로 및 인접 토지의 오염 가능성 해결	Major Must
FV-GFS 25.02	농장 내 폐기물과 오염원을 식별해야 한다.	농업 생산과 관련된 폐기물(예: 종이, 골판지, 플라스틱, 기름) 및 오염원(예: 과잉 비료, 배기 연기, 기름, 연료, 소음, 폐수, 화학 물질)을 확인해야 한다. 옵션2 생산자단체는 품질관리체계(QMS)에 해당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개별생산자의 것을 갈음한다.	Min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FV-GFS 25.03	모든 지게차 및 기타 구동 운송 트롤리는 깨끗하고 잘 유지 관리하며 배기 가스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는 데 적합해야 한다.	식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운송을 유지해야 하며, 특히 매연 배출에 주의해야 한다. 지게차 및 기타 구동식 수송 트롤리는 전기 또는 가스 구동식이어야 한다.	Recom.
FV-GFS 25.04	디젤 및 기타 연료 탱크 보관 구역은 환경적으로 안전해야 한다.	연료 저장 탱크로부터 유출물을 가두어 두기 위한 시설은 그 구역의 가장 큰 탱크 부피의 110% 이상을 담을 수 있는 독을 흡수하지 않는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는 가장 큰 탱크 부피의 165% 이상이어야 한다.	Minor Must
FV-GFS 25.05	유기 폐기물은 환경 오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유기 폐기물은 퇴비화하고 토양 조절에 사용해야 한다. 퇴비화 방법은 해충, 질병 또는 잡초 확산 위험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Recom.
FV-GFS 25.06	세척 및 청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은 환경, 건강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오염된 기계(예: 스프레이 장비, 개인 보호 장구(PPE), 수냉식 냉각기) 세척으로 인한 폐수는 환경이나 인간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배수는 용수원에 오염을 초래하거나 급수 시스템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Minor Must
FV-GFS 25.07	포장재 및 기타 비제품 폐기물의 파편과 작은 조각들을 현장에서 제거해야 한다.	포장재 및 기타 비제품 폐기물의 파편과 작은 조각들은 작업 후 현장에서 제거해야 한다.	Min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FV-GFS 25.08	플라스틱(비닐)은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농업 생산에 장기적 및 단기적으로 사용하는 플라스틱 (또는 비닐) 제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증거가 있어야 한다: - 운영자는 플라스틱이 환경으로 배출되는 양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음. - 제조업체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검사, 유지 보수 및 교체함으로써 플라스틱 사용 효율을 높임. - 회수된 플라스틱은 안전하게 보관되고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폐기. - 사용 후 플라스틱은 최대한 재활용 또는 재사용. - 가능한 경우, 플라스틱보다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대안을 채택. 옵션2 생산자단체는 품질관리체계(QMS)에 해당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개별생산자의 것을 같음한다.	Minor Must
FV-GFS 25.09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방지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 음식물 쓰레기: 인간의 소비, 동물 사료 또는 친환경적인 재료로 유통되지 않는 식품.	증거는 다음 사항을 나타내야 한다. 잉여제품**을 다음 중 한가지 방법으로 활용하였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 인간의 소비(가공, 사회적 식품 서비스 등) - 동물 사료 - 친환경적인 기반 소재	Recom.

구분	원칙	기준	수준
		음식물 쓰레기는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 재활용, 퇴비화 및/또는 토지 사용 - 용도 변경(예: 에너지 회수를 통한 폐기물 소각) - 기타 폐기 방법 잉여 식품 및 음식물 쓰레기 관리는 정량적 기록을 기반으로 해야한다(추정 허용). 옵션2 생산자단체는 품질관리체계(QMS)에 해당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개별생산자의 것을 갈음한다. ** 잉여 제품: 재배 및 수확한(또는 수확되지 않고 밭에 남겨진) 농장의 생산물이지만 고객에게 가지 않음.	
FV-GFS 26	종묘 등		
FV-GFS 26.01	종묘 등은 관련법에 따라 구해야 한다.	최소한 품종 이름, 배치 번호, 종묘 등 공급업체 및 가능한 경우 종자 품질에 대한 추가 정보(발아, 유전적 순도, 물리적 순도, 종자 건강 등)를 명시하는 문서(예: 빈 종자 패키지, 식물 정보, 포장 목록 또는 송장)가 있어야 한다. 종묘 등에 대한 GLOBALG.A.P. 사무국 인증을 받은 육묘장에서 생산된 재료는 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Maj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FV-GFS 26.02	종묘 등을 구할 때에는 지적재산에 관한 법을 준수해야 한다.	생산자는 품종 또는 대목을 사용하는 경우, 종묘가 해당 지적 재산권 규정에 따라 구매되었거나 달리 획득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요청 받을 때, 문서를 제시해야 한다. 문서는 라이선스 계약일 수 있으며(종자에서 유래하지 않고 식물에서 유래한 물질), 식물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지난 24개월 동안 획득한 양과 사용된 모든 종묘를 증명하기 위해 품종 이름, 배치 번호, 종묘 공급업체, 포장 목록/배송 메모 또는 송장을 기재한 문서가 필요하다. 참고: UPOV의 PLUTO 데이터베이스(http://www.upov.int/pluto/en)와 CPVO 웹사이트의 품종 찾기(https://cpvoextranet.cpvo.europa.eu/)는 세계 각 품종 및 국가에 대한 등록 세부 정보 및 지적 재산권 보호 세부 정보를 제공한다.	Major Must
FV-GFS 26.03	종묘를 자체 생산할 때, 건강 품질 관리체계를 시행하고 기록해야 한다.	해충 및 질병의 가시적 징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포함된 품질관리체계를 갖춰야 하며 모니터링 시스템에 최신 기록을 입력해야 한다. “육묘장”이라는 용어는 접목 재료의 자체 선택을 포함하여 종묘가 생산되는 모든 장소를 의미한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해당되는 경우 모식물 또는 원산지 작물의 기록 및 식별을 포함해야 한다. 기록은 정기적으로 정해진 간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재배된 나무 또는 식물을 자가 사용 목적으로만 쓰는 경우(즉, 판매하지 않는	Min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경우) 모니터링 및 번식 활동에 대한 내부 기록으로 충분하다. 대목이 사용되는 경우 문서를 통해 대목의 원산지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FV-GFS 26.04	농장 내 종묘에 적용된 모든 화학 처리에 대한 최신 기록이 있어야 한다.	종묘 번식을 위한 육묘 기간 동안 적용된 모든 작물보호제 처리 기록을 볼 수 있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위치 - 날짜 - 각 식품의 상품명, 유효성분, 안전사용기간 - 담당자 이름 - 적용 사유 - 수량 - 사용 기계 이 기준은 종묘의 처리가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단기 작물에 적용하며, 육묘 후 활발한 생산이 더 오랜 기간 동안 분리되는 대부분의 과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Major Must
FV-GFS 26.05	구입한 종묘 등에 대한 화학 처리 정보가 있어야 한다.	공급자는 종묘 등에 사용한 화학 제품의 이름이 있는 기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형태일 수 있다. - 공급자가 기록한 화학적 처리 기록	Maj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 종자 봉투에 적힌 정보 - 사용한 작물보호제의 목록 종묘 등에 대해 GLOBALG.A.P. 인증, 또는 이와 동등하거나 GLOBALG.A.P.가 인정한 인증을 받은 공급업체로부터 종묘를 공급받는 생산자는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년생 작물은 "해당 없음(N/A)"으로 표기한다.	
FV-GFS 27	유전자변형생물체		
FV-GFS 27.01	유전자변형(GM) 물질 사용 및 취급 절차가 있어야 한다.	GM 물질(예: 작물 및 시험체)이 어떻게 재배되고 취급되는지 설명하는 문서화된 절차가 있어야 한다.	Minor Must
FV-GFS 27.02	유전자변형 작물의 재배 및 시험 재배는 생산 국가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정을 따른다.	생산자는 생산 국가의 현행 규정을 비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유전자변형의 내용과 식별 방법을 기록해야 한다. 구체적인 관리 방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Major Must
FV-GFS 27.03	바이어에게 유전자변형생물체(GMO)를 공급하는 것임을 알려야 한다.	문서화된 증거를 보관해야 하며, 바이어에게 공급되는 모든 제품이 합의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Major Must
FV-GFS 27.04	유전자변형(GM) 작물과 일반 작물의 우발적인 혼합을 방지하여야 한다.	저장소에서 유전자변형 작물이 식별되고 안전하게 격리되는지 평가해야 한다.	Maj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FV-GFS 28	토양과 배지		
FV-GFS 28.01	토양 관리 및 보호		
FV-GFS 28.01.01	생산자는 토양을 개선하고 최적화하기 위한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생산자는 작물의 영양적 필요와 토양 비옥도 유지에 대한 고려 사항이 적용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토양 분석 기록 및 작물별 정보는 증거로 제시 가능해야 한다.	Major Must
FV-GFS 28.01.02	농장 토양지도를 갖춰야 한다.	토양 유형은 토양 속성, 토양 분석 또는 지역(구역) 토양 유형 지도에 기반하여 각 필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Recom.
FV-GFS 28.01.03	가능한 경우 일년생 작물에 대한 윤작을 실시한다.	토양구조 개선 및 토양 유래의 병해충 최소화를 위하여 윤작을 실시할 때, 기록을 통해 재배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년간의 윤작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Minor Must
FV-GFS 28.01.04	토양 구조를 개선하고 토양 경화를 막기 위한 기술을 사용하여야 한다.	토양 경화를 최소화하는 데 적합한 기술(심근성 녹비 작물 재배, 배수, 심토 파쇄, 저압 타이어 사용, 트램라인, 영구 이랑 등)의 적용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술은 해당 토지에서 사용 가능해야 한다.	Minor Must
FV-GFS 28.01.05	토양 침식을 줄이기 위한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강우, 바람에 의한 토양 침식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방법 및 개선 조치(멀칭, 경사지에서의 교차선 기법, 배수로, 초지조성 또는 녹비작물, 필지 경계에 나무 및 관목 식재 등)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Min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FV-GFS 28.02	토양 소독		
FV-GFS 28.02.01	토양 소독제 사용에 대한 사유를 문서화해야 한다.	토양 소독제 사용에 대한 사유가 문서화해야 하며, 사용 기록에는 방제의 대상, 위치, 날짜, 유효성분, 투여량, 사용 방법, 작업자를 포함한다. 메틸 브로마이드는 토양 소독제로 사용할 수 없다.	Minor Must
FV-GFS 28.02.02	식재 금지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식재를 금지하는 기간을 기록해야 한다.	Minor Must
FV-GFS 28.03	배지		
FV-GFS 28.03.01	생산자는 배지 재활용에 참여해야 한다.	생산자는 재활용 기판의 날짜와 수량을 기록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송장/적재 서류 또한 포함한다. 적용 가능한 재활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농장 외 재활용 프로그램에도 적용할 수 있다.	Recom.
FV-GFS 28.03.02	배지를 재사용 하기 위해 소독할 때 사용한 화학물질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배지를 농장에서 소독하는 경우, 필지, 과수원 또는 온실의 이름 또는 위치를 기록해야 한다. 농장 외부에서 소독하는 경우, 배지를 소독하는 회사의 이름과 위치를 기록해야 한다. 모든 경우에 다음 사항을 모두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 소독 날짜 - 소독제의 이름 및 유효성분	Min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 사용된 기계(예: 1000리터 탱크) - 사용된 방법(침지, 안개 분무 등) - 작업자(실제로 화학물질을 적용하고 소독을 수행한 사람) - 식재 금지 기간 해당되고 실행 가능한 경우, 재사용할 배지의 소독에는 스팀 처리나 비화학적 대안을 사용해야 한다.	
FV-GFS 28.03.03	자연에서 직접 구한 배지는 지정된 보존 지역에서 채취할 수 없다.	자연에서 직접 구한 배지를 사용할 때에는 출처를 증명하는 기록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기록은 해당 배지가 지정된 보호 구역에서 유래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이탄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기회도 고려해야 한다.	Minor Must
FV-GFS 29	비료 및 성장촉진제		
FV-GFS 29.01	살포 기록		
FV-GFS 29.01.01	모든 비료 및 성장촉진제 사용에 대한 최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수경(양액) 재배 및 관비 시스템을 포함한 비료(유기질 및 무기질) 및 성장촉진제 사용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Major Must
FV-GFS 29.01.02	비료 사용 기록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해야 한다.	지리적 위치 및 필지명	Min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FV-GFS 29.01.03	비료 사용 기록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날짜	Minor Must
FV-GFS 29.01.04	비료 사용 기록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비료의 유형 및 이름	Minor Must
FV-GFS 29.01.05	비료 사용 기록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용량(해당되는 경우 비율 또는 농도)	Minor Must
FV-GFS 29.01.06	비료 사용 기록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비를 수행한 작업자(개인 또는 팀)	Minor Must
FV-GFS 29.01.07	비료는 메트릭스(정량지표)를 통해 관리한다.	정량지표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농장에서 적용되는 칼륨, 질소 및 인의 총량(kg/작물 kg/월 및 kg/ha/월). 정량지표는 무기 및 유기 비료, 시간 단위(예: 성장 주기), 식품 kg 및 생산 ha당 비료 양을 포함한다. 옵션2 생산자단체는 품질 관리 시스템(QMS)에 해당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개별생산자의 것을 갈음한다. 생산자 단체 및 개별농장의 정량지표에 대한 결과(데이터)는 활용 가능해야 한다.	Recom.

구분	원칙	기준	수준
FV-GFS 29.02	보관		
FV-GFS 29.02.01	비료와 성장촉진제는 식품안전을 훼손하지 않는 적절한 방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비료 및 성장촉진제는 작물보호제 및 수확물과 격리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비료(유기 및 무기), 성장촉진제 및 작물보호제 간의 교차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위험이 높은 경우 물리적 장벽(예: 벽, 시트)을 설치할 수 있다. 작물보호제와 함께 사용하는 비료 및 생물촉진제(미량영양소 또는 엽면 시비제 등)는 밀폐된 용기에 보관할 경우 작물보호제와 함께 보관할 수 있다.	Major Must
FV-GFS 29.02.02	비료와 성장촉진제는 환경 오염의 위험을 줄이는 적절한 방식으로 보관해야 한다.	비료(유기질 및 무기질) 및 성장촉진제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용수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콘크리트 기초, 벽, 누수 방지 용기 등) 수원에서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비료를 보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무기질 비료(예: 분말, 과립 또는 액체)는 환경의 영향(예: 햇빛, 서리 및 비, 고온)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위험평가(비료 유형, 기상 조건, 보관 기간 및 위치)에 따라 플라스틱(비닐) 커버가 허용될 수 있다.	Min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석회와 석고를 재배 현장에 보관하는 것은 허용된다. 물질안전보건자료(SDS)에 허용 되어 있다면, 대량 액체 비료는 외부 용기에 보관할 수 있다. 보관 장소는 통풍이 잘되고 빗물이나 심한 결로가 없어야 한다. 무기질 비료는 폐기물이 없고 설치류의 번식지가 되지 않는 지역에 저장되어야 하며 유출 및 누설을 방지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FV-GFS 29.03	유기질 비료		
FV-GFS 29.03.01	유기질 비료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위험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유기질 비료에 대한 위험평가는 사용 전에 실시하여 문서화하고,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유기질 비료의 종류 - 처리 방법 - 미생물 오염 - 잡초/종자 함량 - 중금속 함량 - 살포 시기 - 살포 위치 (예: 작물의 식용 부분과의 접촉 여부) 관련 절차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이는 바이오가스 플랜트에서 나온 배지에도 적용한다.	Maj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상업적으로 제공되는 유기질 비료의 경우, 위험평가 대신 관련 문서와 품질 및 내용 인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FV-GFS 29.03.02	유기질 비료의 살포일과 수확일 사이의 기간은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퇴비화된 유기질 비료의 사용과 수확 사이의 기간이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준수되었음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 가축의 생분뇨가 사용되는 경우, 토양에 섞어야 한다. 생분뇨의 종류와 사용 목적에 따른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수확 전 안전 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다음 최소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과수(즉, 과실이 지면에 닿지 않도록 높이 매달린 나무, 저지대 관목 제외): 생분뇨는 발아 전에 살포하거나 위험평가에 따라 안전사용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수확 60일 전보다 늦게 사용할 수 없다. - 잎채소: 생분뇨는 수확일과 상관없이 정식 후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 - 기타 작물: 생분뇨는 수확 60일 전에만 사용할 수 있다.	Major Must
FV-GFS 29.03.03	농장에서 인분 슬러지를 사용할 수 없다.	등록작물의 생산에는 인분 슬러지를 절대 사용할 수 없다. 퇴비화되었거나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제품에 포함된 인분 슬러지의 사용도, 해당 규정에 따른 합법적인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허용되지 않는다.	Maj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FV-GFS 29.04	영양 성분		
FV-GFS 29.04.01	사용한 비료의 주요 영양소(질소, 인, 칼륨) 함량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24개월 등록작물에 사용한 모든 비료(유기질 및 무기질)에 대해 주요 영양소 함량(또는 권장량)을 자세히 설명하는 문서화된 증거 및 라벨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Minor Must
FV-GFS 29.04.02	구매한 무기질 비료에는 중금속을 포함한 화학물질 함량에 대한 문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지난 12개월 이내에 등록된 작물에 사용된 모든 무기 비료에 대해 중금속을 포함한 화학 물질 함량을 자세히 설명하는 문서가 있어야 한다.	Recom.
FV-GFS 30	용수		
FV-GFS 30.01	용수 사용 위험평가 및 관리 계획		
FV-GFS 30.01.01	수확 전/후 사용한 물로 인한 식품안전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용수 사용에 대한 문서화된 위험평가가 시설 및 노지 생산과 수확후관리에 대해 수행해야 한다. 위험평가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지도, 사진, 도면(손으로 그린 도면도 허용) 또는 기타 묘사를 통해 용수원, 관리시설, 그리고 용수의 흐름도(저장 시스템, 저수지, 또는 재사용을 위해 포집된 용수를 포함) 등 위치를 식별하며, 이 묘사는 현장 지도 및 농장의 식별 시스템과 연계되어야 한다. - 해당되는 경우, 과거의 분석 결과 - 용수 사용 시기(작물 성장 단계 또는 수확 후)	Maj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오염의 위험 - 교차 오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물 공급 절차와 관련된 위험 관리 방법 - 작물과의 물 접촉 - 작물의 특성 및 성장 단계 또는 취급 방법 - 비료, 작물보호제 또는 수확후관리에 사용되는 물의 수질 - 필요한 경우, 오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해진 조치(예: 울타리로 인간과 가축의 침입 방지) - 물의 품질에 대한 허용 가능한 기준치 - 식품안전 및 용도 적합성에 대한 영향 - 식품 생산에 사용되지 않는 물의 관리(예: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저장된 물 등) - 수확 후 활동에서 제품과 접촉하는 물에 대해 한 작기 또는 인증 주기당 최소 한 번의 분석이 필요하며, 샘플은 되도록 용수의 사용 지점에 가까운 곳에서 채취해야 한다(심지어 상수도원을 사용할 경우에도 최소 한 번의 분석이 필요). 위험평가는 매년 실시하고, 운영 시스템이 변하여 위험이 변할 경우에는 1년이 지나기 전에라도 재실시해야 한다.	

구분	원칙	기준	수준
FV-GFS 30.01.02	수확 전/후 사용한 물로 인한 환경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용수 사용에 대한 문서화된 위험평가가 시설 및 노지 생산과 수확후관리에 대해 수행해야 한다. 위험평가에는 최소한 다음을 포함한다: - 용수원 - 공급 시스템 - 관개 방법 - 농장 내 다른 활동에 사용되는 주요 물 사용 - 농장 활동이 외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위험평가는 매년 실시하고, 운영 시스템이 변하여 위험이 변할 경우에는 1년이 지나기 전에라도 재실시하여야 한다.	Major Must
FV-GFS 30.01.03	용수 관리 계획을 갖춰야 한다.	문서화된 용수 관리 계획은: - 검토된 위험평가를 바탕으로 최소한 매년 갱신할 것 - 관개 및 기타 물 공급 장비의 유지 보수의 필요성을 평가할 것 - 유지 보수 및 수리를 담당하는 작업자를 교육할 것 - 지역 관개 시스템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계획으로 대치 가능 - 수질 분석 결과를 나타낼 것 - 수질과 관련된 시정조치를 포함할 것	Maj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FV-GFS 30.01.04	(생산자의 법적 책임 범위가 농장에 국한되어 있지만) 농장 외 활동을 통하여 농장 내 관리를 보완한다.	다른 생산자, 부문 또는 특정 작물 계획, 비정부기구 등과 같은 인근 유역, 유역, 경관 또는 그 이상의 이해 관계자들과의 프로젝트 참여, 공동 활동 또는 물 관리에 대한 생산자의 인식(또는 참여)등을 포함한다.	Recom.
FV-GFS 30.02	용수원		
FV-GFS 30.02.01	농장에서 사용하는 물은 법적으로 유효한 허가 또는 자격을 통해 획득해야 한다.	다음 모든 항목에 대해 적절한 기관에서 발급한 유효한 허가/면허가 있어야 한다: - 농장 내 물 공급 - 저수 시설 - 관개, 제품 세척, 플로팅 등 물의 전반적 사용 -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하천 또는 기타 환경 민감 지역으로의 물 배출 이 허가/면허는 인증기관의 심사 시 제시하여 하며, 유효한 기한을 가져야 한다. 법적으로 요구됨에도 허가/면허가 없는 경우, 생산자가 허가를 적극적으로 신청했으며, 승인이 진행 중이고 관련 용수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금지 증거가 명확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	Maj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FV-GFS 30.02.02	용수 사용 허가/면허에 명시된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허가/면허에 시간별, 일별, 주별, 월별, 또는 연간 추출량이나 사용량과 같은 특정 조건이 설정되는 경우, 추출량을 모니터링하는 장치는 정확한 수치를 제공할 수 있는 올바른 위치에 있어야 한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Major Must
FV-GFS 30.03	농장에서의 효율적인 물 사용		
FV-GFS 30.03.01	가능한 경우, 물을 수집하고 적절한 경우 재활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제적 및 실질적으로 가능한 경우(건물 지붕, 온실 등에서) 물 수집 및 재활용을 해야 한다. 물 수집이나 재활용은 단순히 빗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용수 공급 시스템에서의 물 수집은 권장되지 않는다.	Minor Must
FV-GFS 30.04	물 저장		
FV-GFS 30.04.01	용수 저장 시설을 두고 잘 관리함으로써 용수 가용 기간을 최장화하여야 한다.	농장이 계절에 따라 물이 이용 가능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 용수 사용률이 낮은 기간 동안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저수 시설이 있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하며 울타리를 치거나 안전하게 유지해야 한다.	Recom.
FV-GFS 30.04.02	물은 식품안전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한다.	탱크, 시스톤 또는 기타 저수 장치에 물을 저장하는 경우, 저장된 물이나 제품에 대한 위험을 식별해야 한다. 물 저장 용기가 공기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 오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용기는 청결해야 하며, 물은 수질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Maj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FV-GFS 30.05	수질		
FV-GFS 30.05.01	수질분석은 위험평가에 따라 식품안전을 위해 실시해야 한다.	수질분석은 위험평가, 산업계의 기준,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한 빈도로 식품안전을 위해 실시해야 한다. 수질분석은 용수 관리 계획의 일부로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위험평가에 따라 더 자주 실시할 수 있다 (예컨대, 환경통제형 농업(CEA)의 경우). 수확후관리 시 제품과 접촉하는 물의 경우, 계절 또는 인증 주기 당 1회 이상 분석해야 하며, 시료는 되도록 사용 지점에 가까운 곳에서 채취해야 한다. 상수도를 사용할 경우에도 최소 1회 이상의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수질분석은 수계의 특성 및 범위, 생산 범위(제품 유형, 적용, 수확, 취급, 수원 등)를 반영해야 한다. 서로 다른 용수원을 사용할 경우 각각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시료는 일반적으로 적용 지점에 가능한 가까운 위치에서 용수원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에서 채취해야 한다. 수질분석은 제품에 물을 사용하고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에 수행해야 한다. 수질 분석을 위한 문서화된 절차는 다음을 포함한다: - 채취 빈도 - 채취 책임자	Maj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 채취 방법 - 분석하는 실험실 - 채취 위치 모든 분석 기록은 보관해야 한다.	
FV-GFS 30.05.02	위험평가 결과와 수질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시정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수질분석은 위험평가, 산업계의 기준, 관련 규정에 대하여 평가되어야 하며 시정조치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조치는 위험수준에 따라 실시한다. 물 사용으로 인한 제품 오염 위험을 줄이기 위한 가능한 전략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물을 사용하기 전에 소독 - 작물의 수확 가능한 부분과 물의 접촉 방지 - 관개시스템의 문제에 조치 - 병원균 농도가 감소하도록 용수 사용과 수확 사이에 충분한 기간을 두기 이러한 전략을 시행하는 생산자는 제품 오염 위험이 해결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Maj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FV-GFS 30.05.03	처리된 하수는 식품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한다.	처리된 하수는 위험을 식별하고 효과적으로 완화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작물의 유형, 성장 측면, 식용 부분과의 접촉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수질분석은 처리가 일관되게 효과적인지 검증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수행해야 한다. 처리된 하수나 재활용수가 사용되는 경우, 수질은 현행 규정이나, 현행 규정이 없을 경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행한 "폐수, 분뇨 및 회색수의 안전한 사용 지침(2006)"을 준수해야 한다. 폐수 처리를 위한 미생물 성능 목표의 최소 검증 모니터링 지침은 WHO "폐수, 분뇨 및 회색수의 안전한 사용 지침"의 표 4.5(2권, 2006) 및 표 2.9(1권, 2006)에 나타나 있다. 수질은 대장균(<i>Escherichia coli</i>, <i>E. coli</i>)을 측정하여 분석한다. 그러나 다른 현행 규정 및 업계 표준에 따라 총 분변성 대장균을 참고할 수 있다. 더 엄격한 현행 규정이 없을 경우, WHO에서 설정한 100ml 처리된 폐수당 ≤ 1000 E. coli의 검증 수준이 모니터링 목적으로 채택해야 한다. 많은 현행 규정에서는 재생, 순환, 관개용 물에 대해 더 엄격한 품질 요건을 요구하므로, 목표 수질은 위험평가 및 관련 문서를 기반으로 설정해야 한다. 용수에 오염 가능성이 있는 경우(예: 상류 오염원), 생산자는 수질분석을 통해 해당 용수가 현행 규정 및 요건을 충족하는지, 또는	Maj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현행 규정이 없을 경우 WHO 지침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증명해야 한다. 처리되지 않은 하수는 작물에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처리된 하수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 없음(N/A)"으로 표기한다.	
FV-GFS 30.05.04	수확 및 수확후관리에서 제품과 접촉하는 물은 먹는물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수확 및 수확후관리(냉각, 운송, 세척 등)에서 사용되는 물(얼음 포함)은 먹는물의 미생물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제품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취급해야 한다. 유일한 예외는 담수 수확을 하는 크랜베리 밭으로, 물이 제품에 대한 미생물 오염원이 아님을 분석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Major Must
FV-GFS 30.05.05	생산, 수확, 수확후관리에서 사용되는 재사용 용수는 적절한 빈도로 교체하거나 보충해야 한다.	생산, 수확, 수확후관리에서 사용되는 물이 재사용되는 경우, 물 교체 빈도는 적용 가능한 파라메타(pH, 살균제의 효과, 탁도, 시각적 평가 등)에 따라 설정해야 한다. 재사용수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 없음(N/A)"으로 표기한다.	Major Must
FV-GFS 30.05.06	수확 또는 수확후관리에서 사용되는 처리수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수확 및 수확후관리(예: 냉각)에서 사용되는 처리된 물(살균제, 오존 등)은 처리 과정에 대한 문서화된 모니터링 시스템과 허용 가능한 파라메타의 정기적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모니터링은 위험평가에 따라 설정된 빈도로 수행해야 한다. 모니터링 중 측정된 값은 설정된 파라메타와 비교해야 하며, 허용 기준을 벗어난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Maj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FV-GFS 30.06	관개 예측 및 기록 보관		
FV-GFS 30.06.01	관개량을 계산하고 최적화하기 위해 도구를 정기적으로 사용해야한다.	생산자는 관개의 수요가 데이터(지역의 농업 연구소 데이터, 농장의 강수량 측정기, 배지 재배포용 배수 트레이, 증발계, 토양 수분 함량 측정을 위한 수분 장력계 등)에 근거하여 계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농장에서 사용하는 도구가 있는 경우, 이 도구들이 효과적이고 양호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강우에 의존하는 작물의 경우에만 "해당 없음(N/A)"으로 표기한다.	Minor Must
FV-GFS 30.06.02	사용된 물의 양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물 사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갖춰야 한다.	관개/관비에 사용한 물의 기록을 보관하여 생산에 필요한 물의 양을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관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갖춰야 한다. 옵션 2 생산자단체의 경우, 품질관리체계(QMS) 수준에서 개별생산자의 증명을 대체할 수 있다.	Major Must
FV-GFS 30.06.03	물관리는 메트릭스(정량지표)에 기반한다.	정량지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장에서 농업 생산에 사용되는 최소 월별 물의 총량(m3/현장/월 단위). 특정 출처에서 추출한 물의 양도 나열해야 한다 정량지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관개에 사용된 월별 물의 양/ha. 지표는 수원(빗물 제외), 시간 단위(예: 성장 주기), 식품 kg 및 생산 ha당 사용된 물의 양	Recom.

구분	원칙	기준	수준
		옵션 2 생산자단체는 품질 관리 시스템 수준(QMS)에 해당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개별생산자의 것을 갈음한다. 생산자 단체 및 개별농장 정량지표에 대한 결과(데이터)는 활용 가능해야 한다.	
FV-GFS 31	해충종합관리(IPM)		
FV-GFS 31.01	해충종합관리(IPM)는 교육 또는 컨설팅 등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기술 책임자가 생산자인 경우, 관련 역량은 기술적 지식(IPM 관련 자료 학습, 관련 강의 이수) 또는 장치의 사용(농장 내 예찰, 기록 등)으로 증명할 수 있다. 외부 전문가가 진행할 경우, 해당 컨설턴트가 그 목적을 위해 공식 기관에 의해 고용된 것이 아니라면 공식 자격, 특정 교육 등을 통해 교육 및 기술 역량을 증명해야 한다. 옵션 2 생산자단체의 경우, 품질관리체계(QMS) 수준에서 개별생산자의 증명을 대체할 수 있다.	Minor Must
FV-GFS 31.02	생산자는 등록된 작물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해충, 질병 및 잡초에 대해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생산자는 등록된 작물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해충, 질병 및 잡초의 존재와 잠재적 피해를 식별하는 정보에 대해 구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설명은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는 생산자가 주요 등록 작물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해충, 질병 및 잡초에 대해 해당 작업자들을 어떻게 교육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Maj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옵션 2 생산자단체의 경우, 품질관리체계(QMS) 수준에서 개별생산자의 증명을 대체할 수 있다.	
FV-GFS 31.03	해충종합관리(IPM) 계획에는 등록작물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해충, 질병 및 잡초를 관리하기 위해 농장 수준에서 사용하는 조치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IPM 계획은 등록작물에 관련된 해충, 질병 및 잡초를 관리하기 위해 생산자가 사용하거나 고려할 수 있는 조치를 설명해야 한다. 계획은 다음을 포함한다: - 작물 및 특정 상황에 따라 생산자 또는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적용하는 예방적, 비화학적 및 화학적 방법에 기반한 단계적 접근 방식 - 방제 여부, 방제 시점 결정을 위한 해충, 질병 및 잡초의 모니터링 옵션 2 생산자단체의 경우, 품질관리체계(QMS) 수준에서 개별생산자의 증명을 대체할 수 있다.	Minor Must
FV-GFS 31.04	생산자는 예방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생산자는 등록작물(개별 또는 작물 그룹별)에서 두 가지 이상의 활동을 수행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이러한 활동에는 작물의 활력을 유지하고 해충 발생률과 피해 강도를 줄여 작물보호제 사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재배 방법을 포함해야 한다.	Maj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FV-GFS 31.05	생산자는 해충 및 질병 관리를 계획하기 위해 등록작물의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한다.	생산자는 등록작물에서 두 가지 이상의 활동을 수행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해충과 그 천적이 언제,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 파악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한 해충 관리 기법을 계획해야 한다.	Major Must
FV-GFS 31.06	생산자는 해충을 관리하기 위해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생산자는 작물의 경제적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해충에 대해 특정 방제가 이루어진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생산자는 해충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경제적 손실을 입도록 선택할 수 있다. 가능한 경우 비화학적인 접근법을 고려해야 한다. 생산자가 개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없음(N/A)"으로 표기한다.	Major Must
FV-GFS 31.07	사용 가능한 작물보호제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약제저항성 대응 활동을 준수해야 한다.	해충, 질병 또는 잡초의 수준이 작물에서 반복적인 방제를 필요로 하는 경우, 라벨 또는 기타 출처(사용 가능한 경우)에 명시된 저항성 방지 권장 사항을 준수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 생산국 또는 수출국에서 하나의 화학적 작용 방식 또는 작물보호제만 존재하거나 사용이 허용된 경우, 제품의 교차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다. 약제저항성 관리 전략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문서화해야 한다: - 항상 약품 라벨에 있는 권장 사항을 준수할 것.	Min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 최적의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낮은 용량 사용을 피할 것. -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서로 다른 사용 방식을 가진 작물보호제를 대상 해충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차 사용 프로그램과 혼합 사용을 시행할 것.	
FV-GFS 31.08	생산자는 해충종합관리(IPM) 결과를 활용하여 학습하고 IPM 계획을 개선해야 한다.	생산자는 매년 IPM 계획을 평가하고, 필요하다고 확인된 경우 개선 사항을 도입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 옵션 2 생산자단체의 경우, 품질관리체계(QMS) 수준에서 개별생산자의 증명을 대체할 수 있다.	Minor Must
FV-GFS 32	작물보호제		
FV-GFS 32.01	작물보호제 관리		
FV-GFS 32.01.01	생산국이 허가한 작물보호제만 사용해야 한다.	생산국이 허가한 작물보호제를 사용하도록 보장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참고 목록(온라인 참고 가능), 제품 라벨, 또는 현행 규정 설명의 형태로 이를 증명할 수 있다. 생산국에 공식 등록 제도가 없는 경우, 생산자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농약 유통 및 사용에 관한 국제 행동 강령"을 참고해야 한다.	Maj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국가 제도에서 허용하고 있다면 작물보호제 사용을 유사한 작물에 확대 적용할 수 있다(지침 참조). 상업적 브랜드 제품(유효성분 조성을 포함하여)으로 사용되는 생물 살충제, 왁스, 수확후관리용 작물보호제에 대해 최신 지역 및 국가 법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문서화해야 한다.	
FV-GFS 32.01.02	작물보호제 및 기타 처리제는 제품 라벨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특정 작물과 의도한 목적(즉, 해충, 질병, 잡초 또는 개입 대상)에 맞게, 그리고 라벨의 내용 또는 공식 등록 기관의 발행물에 따라 작물보호제를 사용하도록 보장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생산자가 라벨에 명시되지 않은 작물보호제를 사용할 경우, 해당 작물에 대한 사용이 그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 올바르게 라벨링된 제품을 사용한다.	Major Must
FV-GFS 32.01.03	생산자는 작물보호제가 인접한 농장으로 비산되어 나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생산자는 자신의 농장에서 인접한 농장으로 작물보호제가 비산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에는 이웃 농가의 재배 작물에 대한 이해, 울타리 조성, 살포 장비의 유지 관리 등이 포함할 수 있다.	Major Must
FV-GFS 32.01.04	생산자는 작물보호제가 인접한 농장에서 비산되어 들어오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생산자는 인접 구역에서 발생하는 농약 표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Recom.

구분	원칙	기준	수준
		예를 들어, 원치 않는 농약 비산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인근 구역의 생산자와 합의하고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또한 농작물 발의 가장자리에 식생 완충대를 심고 해당 재배지에 작물보호제 샘플링 빈도를 높여야 한다.	
FV-GFS 32.02	살포 기록		
FV-GFS 32.02.01	작물보호제 살포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모든 작물보호제, 수확후관리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 사용한 작물 및 품종 - 살포 위치 (지리적 구역, 농장 이름 또는 참조, 작물이 위치한 밭, 과수원, 온실 또는 시설) -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정확한 날짜(일/월/년) (생산자는 종료 시간을 기록할 필요는 없지만, 종료 날짜는 항상 기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출입금지기간은 다음 날의 시작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등록된 상표명 및 유효성분 또는 천적(학명 포함) - 제품 라벨에 명시된 안전사용기간 또는 라벨에 없을 경우 공식 출처에 따른 기간 - 사용한 제품의 양(중량 또는 부피) 및 농도 또는 비율	Maj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 사용한 기계 또는 살포 장비의 종류 (배낭형 분무기, 항공 살포, 관개 시스템 등) - 살포 목적 (대상 해충, 질병, 잡초, 조건 등) - 작업자 - 사용의 결정 및 승인에 대한 기술적 의사결정자 (모든 사용을 동일한 사람이 승인하는 경우, 해당자의 정보는 한 번만 기록하면 된다.)	
FV-GFS 32.02.02	살포 시점의 기상 조건을 기록해야 한다.	작물보호제 사용 시, 처리 효과나 인접 작물로의 비산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기상 조건(바람, 맑음/흐림, 습도 등)을 기록해야 한다. 이는 체크 박스가 있는 그림문자, 텍스트 정보 또는 다른 적절한 기록 시스템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시설 재배 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없음(N/A)"으로 표기한다.	Major Must
FV-GFS 32.02.03	작물보호제는 정량지표를 통해 관리해야 한다.	정량지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용한 유효성분 목록 - 적용한 유효 성분의 총량 (kg/작물 kg/월 및 kg/ha/월) 측정점은 농장의 다양한 생산 장소, 시간 단위(예: 재배 주기), 식품 kg 및 생산 ha당 활성 성분 양을 포함한다 옵션2 생산자 단체는 품질 관리 시스템(QMS)에 해당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개별생산자의 것을 갈음한다. 생산자 단체 및 개별농장 측정점에 대한 결과(데이터)는 활용가능해야 한다.	Recom.

구분	원칙	기준	수준
FV-GFS 32.03	작물보호제의 안전사용기간		
FV-GFS 32.03.01	규정된 안전사용기간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생산자는 작물보호제 살포 기록 및 작물 수확 날짜와 같은 기록을 통해 작물에 작물보호제를 사용한 날로부터 수확 전까지의 기간을 준수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연속 수확 상황에서는 현장에 안전사용기간을 준수하기 위한 시스템(경고 표지, 적용 시점 등)을 갖춰야 한다.	Major Must
FV-GFS 32.04	빈 용기		
FV-GFS 32.04.01	작물보호제의 빈 용기는 보관 및 폐기 전에 물로 세 번 이상 행구며, 행군 물은 환경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작물보호제 용기를 세척하는 압력 세척 장비가 작물보호제 살포 기계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각 용기를 폐기 전에 세 번 이상 행구도록 문서화된 지침이 있어야 한다. 용기 취급 장치를 사용하거나 살포 작업자를 위한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빈 작물보호제 용기에서 나온 행군 물은 항상 혼합 시 살포 장비의 탱크로 다시 넣거나, 식품안전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Maj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FV-GFS 32.04.02	빈 작물보호제 용기를 동일한 제품을 담거나 운반하는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빈 작물보호제 용기가 원래 라벨에 명시된 동일한 제품을 담거나 운반하는 용도 외에는 과거에도 재사용하지 않았고, 현재도 재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 음용수 운반에 용기가 사용될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는 폐기 전에 용기에 구멍을 뚫어야 한다.	Major Must
FV-GFS 32.04.03	빈 용기는 폐기가 가능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모든 빈 작물보호제 용기는 폐기 전에 작물과 포장 자재로부터 분리되어 안전한 보관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해당 장소는 표지판 등을 통해 영구적으로 표시하고 사람과 동물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Minor Must
FV-GFS 32.04.04	빈 용기는 사람과 환경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폐기해야 한다.	생산자는 빈 용기를 폐기하기 전에 안전한 처리 절차를 사용하고, 사람에게 내용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환경(수로, 식물, 동물)의 오염을 방지하는 폐기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Minor Must
FV-GFS 32.04.05	공식적인 수거 및 폐기 시스템이 있는 경우 이를 사용하며, 빈 용기는 해당 수거 시스템의 규칙에 따라 적절히 보관, 라벨링 및 취급해야 한다.	공식적인 수거 및 폐기 시스템이 있는 경우, 생산자는 참여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빈 작물보호제 용기는 공식 수거 및 폐기 제도의 요구사항에 따라 적절히 보관, 라벨링, 취급 및 폐기되어야 한다.	Minor Must
FV-GFS 32.04.06	작물보호제 용기의 폐기 또는 처리에 관한 모든 지역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빈 작물보호제 용기의 폐기와 관련하여 해당 국가, 지역 및 지방의 모든 관련 규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Maj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FV-GFS 32.05	유효기간이 지난 작물보호제		
FV-GFS 32.05.01	유효기간이 지난 작물보호제는 안전하게 보관하고 식별하며, 승인된 또는 허가된 경로를 통해 폐기해야 한다.	폐기 대상 작물보호제가 공식적으로 승인된 경로를 통해 폐기되었음을 나타내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폐기 대상 작물보호제는 안전하게 보관되고 식별 가능하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Minor Must
FV-GFS 32.06	잔여 혼합물의 폐기		
FV-GFS 32.06.01	사용하고 남은 농약 혼합물이나 탱크 세척수는 적절하게 폐기해야 한다.	최초에 남은 스프레이 혼합물 및 탱크 세척수를 작물에 사용해야 하며, 이때 해당 작물보호제의 라벨에 명시된 전체 용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남은 혼합물이나 탱크 세척수는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폐기해야 한다. 작물보호제 폐수가 개방된 환경에 배출되어서는 안 된다. 해당 기록은 보관해야 한다.	Minor Must
FV-GFS 32.07	잔류농약 분석		
FV-GFS 32.07.01	제품이 거래될 시장에 적용하는 잔류허용기준(MRL)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생산자 또는 생산자의 고객은 제품이 거래될 모든 시장(국내 및 국제)의 현재 적용 가능한 MRL 목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MRL은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거래 예정 시장을 확인하거나, 제품이 거래될 특정 국가를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Maj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FV-GFS 32.07.02	모든 등록제품에 대한 위험평가를 완료해야 하며, 수입국의 잔류허용기준(MRL)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위험평가는 모든 등록작물과 작물보호제 사용에 따른 MRL 초과 가능성을 다루어야 한다. 농약 잔류물은 생산국 및 판매 예정국의 해당 법규 또는 Codex Alimentarius 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위험평가는 분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 생산 기간 동안 또는 수확후관리 중 작물보호제 사용이 없는 경우 - 고객(가공업체 또는 기타)의 잔류농약 분석 증거가 있는 경우 - 독립적인 제3자(예: 인증기관 감사자) 또는 고객에 의해 검증된 위험평가 위험평가에서 분석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을 경우, 샘플링의 횟수, 유형, 위치 및 빈도를 기록해야 한다. 제품이 다른 국가로 수출되든 아니든, 생산국의 MRL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수출 시장의 MRL 기준이 생산국의 기준보다 엄격한 경우, 이러한 MRL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어야 한다. 문서화된 자료는 작물보호제 사용과 MRL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수출 결정을 뒷받침하며, 수출국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Maj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중간 판매자가 모든 선적을 책임지며 수출국이 생산자의 통제 범위 밖에 있는 경우, 생산국의 MRL 기준 준수를 확인해야 한다. 생산자는 위험평가 및 샘플링을 GLOBALG.A.P. 인증기관에 의해 평가된 제3자가 관리하는 작물보호제 잔류물 모니터링 시스템(RMS)에 위임할 수 있다.	
FV-GFS 32.07.03	올바른 잔류허용기준(MRL) 샘플링 및 검사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적용 가능한 샘플링 절차를 준수했음을 증명하는 문서화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Major Must
FV-GFS 32.07.04	잔류허용기준(MRL) 검사에서 허가되지 않은 작물보호제가 검출될 경우 취해야 할 조치를 설명하는 문서화된 행동요령을 제공해야 한다.	MRL 분석에서 해당 제품에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작물보호제(생산국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제품에 사용하도록 라벨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등)가 검출될 경우 취해야 할 조치를 설명하는 문서화된 행동요령을 제공해야 한다. 이 행동요령에는 원인 조사를 위한 절차, 모든 식품안전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 필요시 제품 폐기 절차가 상세히 포함해야 한다.	Major Must
FV-GFS 32.07.05	잔류허용기준(MRL)을 초과할 경우 취해야 할 조치를 문서화해야 한다.	작물보호제 잔류 분석에서 MRL을 초과한 경우(생산국 및, 다를 경우 목적지 국가의 MRL 모두 해당) 취해야 할 조치를 문서화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고객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포함해야 하며, 리콜 및 회수 절차의 일환이 될 수 있다.	Maj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FV-GFS 32.08	기타 물질 사용		
FV-GFS 32.08.01	본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모든 물질에 대한 사용을 기록해야 한다.	물, 토양, 수경재배/양액재배 시스템에 적용된 기타 물질(식물 성장촉진제, 토양개량제, pH 조정제, 자가제조 및 구매한 제품 등)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기록에는 물질의 이름, 작물, 필지, 날짜, 그리고 사용량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매한 제품의 경우, 해당되는 경우 상표명 또는 상업명, 유효성분 또는 주성분(식물, 해조류, 광물 등)을 기록해야 한다. 생산국에 해당 물질에 대한 등록 제도가 있는 경우, 그 물질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생산국에서 이 물질들이 사용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생산자는 해당 자재의 사용이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기록에는 가능한 경우 성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Minor Must
FV-GFS 32.09	작물보호제 및 수확후관리 약제의 보관		
FV-GFS 32.09.01	작물보호제, 생물농약 및 기타 처리제는 잘 보관하여 위험을 초래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작물보호제 보관 장소는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 해당 국가, 지역 및 지방의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생산 구역, 포장 보관 구역, 거주 구역 및 수확한 제품과 격리된 곳에 위치하여 교차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Maj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안전하게 잠겨 있어야 한다. - 작물보호제 취급에 대한 정식 교육을 받은 사람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 혼합량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장치(눈금이 표시된 용기 및 교정된 저울 포함)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모든 작물보호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취급을 위해 필요한 도구(양동이, 물 공급 장치 등)를 갖추고, 이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이는 충전/혼합 구역에도 적용된다). - 등록 작물에 사용하는 작물보호제와 비등록 작물(예: 정원용 화학물질)에 사용하는 작물보호제를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 작물보호제는 원래의 용기와 포장에 보관해야 하며, 파손된 경우에만 새 용기에 사용할 수 있고, 그 경우 새 용기의 라벨은 원래 라벨의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FV-GFS 32.09.02	작물보호제 보관 시설은 구조적으로 안정적이고 견고해야 한다.	보관 시설의 용량은 작물보호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기에 모든 작물보호제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커야 한다. 보관 공간은 튼튼해야 한다.	Min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FV-GFS 32.09.03	작물보호제 보관은 작업자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며,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작물보호제 및 수확후관리용 제품의 보관은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 및 교차 오염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액체는 절대 분말 또는 과립 형태의 제형 위에 보관해서는 안 된다.	Minor Must
FV-GFS 32.09.04	작물보호제는 적절한 온도에서 보관해야 한다.	라벨에 명시된 요구사항의 온도에 맞춰 보관해야 한다.	Minor Must
FV-GFS 32.09.05	작물보호제 보관 장소는 조명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보관 장소는 모든 제품의 라벨이 쉽게 읽힐 수 있도록 자연광 또는 인공 조명으로 충분히 밝게 조명되어야 한다.	Minor Must
FV-GFS 32.09.06	작물보호제 보관 장소는 누설물의 유출을 막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선반은 누설 시 흡수되지 않는 재질(예: 금속, 단단한 플라스틱, 또는 불침투성 라이너로 덮인 재질)이어야 한다. 작물보호제 보관 장소는 가장 큰 액체 용기의 부피의 11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용기나 유출 방지벽을 갖추어 유출, 침투 또는 외부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작물보호제 누설물 처리에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래, 빗자루와 쓰레받기, 비닐봉지 등의 재료와 도구가 고정된 위치에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Min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FV-GFS 32.10	혼합 및 취급		
FV-GFS 32.10.01	작물보호제를 취급하는 작업자는 노출가능성, 독성 등 위험평가에 따라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생산자는 작물보호제에 접촉하는 작업자에게 매년 또는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평가에 따라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 건강 검진은 개인 정보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한다. 위험평가는 건강 검진이 필요한 특정 화학물질에 노출됨을 인지해야 한다. 정부의 농장 작업자 프로그램이나 기타 시스템을 통해 건강 검진이 제공되는 경우, 이는 고노출 작업자를 위한 건강 관리가 쉽게 제공될 수 있음을 위해 평가에서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작업자들은 이러한 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받아야 한다.	Minor Must
FV-GFS 32.10.02	작물보호제는 라벨에 명시된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 및 취급해야 한다.	작물보호제를 혼합할 때 적절한 측정 장치를 사용하여,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취급하고 투입해야 한다.	Major Must
FV-GFS 32.10.03	작물보호제 및 화학물질 보관 장소 근처에 사고처리 절차를 갖춰야 한다.	모든 관련 정보와 비상 연락 전화번호를 포함한 사고처리 절차를 갖춰야 하며, 기본적인 사고 응급조치 순서를 나타내야 한다. 이 절차는 작물보호제 및 화학물질 보관 장소와 지정된 혼합 구역 근처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Min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FV-GFS 32.10.04	작업자 오염에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농장에 있는 모든 작물보호제 및 화학물질 보관 및 충전/혼합 구역에는 세안 시설, 작업장 근처에 깨끗한 물 공급원, 그리고 관련 응급처치 물품이 포함된 구급상자를 구비해야 한다.	Minor Must
FV-GFS 32.10.05	작물보호제는 생산 현장 간에 안전한 방식으로 운반해야 한다.	생산자는 작물보호제가 환경이나 작업자의 건강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반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업계 최선의 방침을 따라야 한다.	Minor Must
FV-GFS 32.10.06	농장은 작물보호제 사용 후 출입금지기간을 다루는 문서화된 절차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작물보호제 라벨에 따라 작물에 사용 후 출입금지기간을 규제하는 명확하고 문서화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여기에는 출입금지기간이 시작되고 끝나는 표준 운영 절차, 기간의 표시 및 출입 가능 시점 표시, 출입 방법, 금지 기간 중 출입의 예외 사항, 예외시 필요한 장비와 허용 시간 등이 포함된다. 더 큰 위험에 노출된 작업자에게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출입금지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화학 물질이 작물에 완전히 마를 때까지 재출입을 할 수 없다.	Maj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FV-GFS 32.11	청구서 및 조달 문서		
FV-GFS 32.11.01	모든 작물보호제 및 수확후관리 처리제에 대한 청구서 및 조달 문서를 보관해야 한다	불법 및 위조된 작물보호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사용 및 보관된 모든 작물보호제의 청구서, 조달 문서 또는 포장 전표를 보관해야 한다.	Major Must
FV-GFS 33	수확후관리		
FV-GFS 33.01	포장(현장 또는 시설) 및 보관 구역		
FV-GFS 33.01.01	수확한 제품과 포장한 제품은 식품안전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보관해야 한다.	모든 수확한 제품(포장 제품, 벌크)은 위생 위험평가에 따라 적절하게 저장하고 오염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Major Must
FV-GFS 33.01.02	포장 제품의 수집, 저장 및 유통 장소는 청결하게 유지 관리해야 한다.	모든 제품 취급 및 저장 시설과 장비(벽, 바닥, 운반 라인, 기계 등)는 문서화된 청소 및 유지·관리 일정에 따라 정해진 빈도로 청소되고 유지·관리해야 한다. 유지·관리는 식품안전의 위험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청소 및 유지·관리 기록은 보관해야 한다.	Major Must
FV-GFS 33.01.03	포장재는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포장재(재사용 가능한 상자 포함)는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오염 및 변질되지 않는 조건에서 보관되어야 한다. 포장재는 외부에 보관할 수 있지만, 오염 위험이 해결된 경우에만 가능하다(예: 포장재가 플라스틱 커버로 밀봉된 경우).	Maj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FV-GFS 33.01.04	청소 장비, 세제, 윤활유 등은 제품의 화학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관 및 사용해야 하며, 식품 산업에서의 사용이 승인된 것들만 사용할 수 있다.	제품의 화학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 장비, 세제, 윤활유 등은 지정된 안전 구역에 보관해야 하며, 제품과 격리해야 한다. 모든 세제, 윤활유 등은 제품과 접촉할 수 있으므로 식품 산업에서 사용을 승인하는 문서화된 증거(특정 라벨 언급 또는 기술 데이터 시트)가 있어야 한다. 화학물질은 제품 라벨 지침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Major Must
FV-GFS 33.02	이물		
FV-GFS 33.02.01	이물로 인하여 제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확실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해충, 돌, 잔해, 유리, 단단한 플라스틱 등 외부 물질이 제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보장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제품 위에 매달리거나 제품 취급에 사용되는 유리, 경질 플라스틱 및 유사한 재료(전구, 조명 기구 등)는 안전 설계로 제작되거나 보호 또는 밀폐해야 한다.	Major Must
FV-GFS 33.02.02	이물 처리 절차를 갖춰야 한다.	유리 및 경질 플라스틱의 파손(온실, 제품 취급, 준비 및 저장 구역 등)을 포함한 이물 오염의 처리 절차를 문서화해야 한다.	Maj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FV-GFS 33.03	온도 및 습도 제어		
FV-GFS 33.03.01	저장 환경을 인위적으로 제어하는 경우, 적정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온도, 습도(해당되는 경우), 및 공기가 제어된 저장 구역은 모니터링되고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모니터링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Major Must
FV-GFS 33.04	해충 관리		
FV-GFS 33.04.01	해충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포장 및 저장 구역의 병해충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해충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충 모니터링과 조치가 효과적임을 시각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Major Must
FV-GFS 33.04.02	해충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 활동을 적절히 이행하여야 한다.	예찰이 이루어져야 하고 해충 방제 검사 및 방역 조치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Major Must
FV-GFS 33.05	제품 라벨링		
FV-GFS 33.05.01	최종 제품의 표시 사항은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최종 제품 포장에 인증 범위에 포함될 경우, 판매 예정국의 법규와 고객 요구 사항에 맞게 라벨링한다. 포장재를 고객이 제공하는 경우, 고객 요구 사항에 따라 표시한다.	Major Must

구분	원칙	기준	수준
FV-GFS 33.06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		
FV-GFS 33.06.01	제품 취급 구역에는 위험 기반의 미생물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수확후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제품 취급 구역에 대한 위험 기반의 미생물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갖춰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식품안전 위험을 줄이기 위한 청소 절차의 효과를 평가하고, 잠재적 오염원(물, 표면 등)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위험평가는 가능한 오염 구역(예: 고빈도 통행 지역 또는 청소가 어려운 위치)을 식별해야 한다.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포함된 환경통제형 농업(CEA)은 제품 취급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생산 활동에 대한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Major Must
FV-GFS 33.07	공기 및 압축 가스		
FV-GFS 33.07.01	제품 취급 구역에는 위험 기반의 미생물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제품 취급에 사용되는 공기와 압축 가스(예: 건조 용도)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되고, 적절하게 저장 및 취급하여 제품 오염의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제품과 접촉하는 압축된 공기에 대한 모니터링의 정도는 위험평가를 기반으로 정의해야 한다. 위험 완화 활동에는 필터 점검을 포함할 수 있으며, 공기 표본에 대한 시험분석은 필수 사항이 아니다.	Major Must

버전/개정 이력

새 문서	대체된 문서	발행일	수정 내용
220607_IFA_GFS_P&Cs_FV_interim_final_amended_v6_0_Jun22_en	220426_IFA_GFS_P&Cs_FV_interim_final_v6_0_Apr22_en	7 June 2022	20.04.04 원칙·기준(P&C) 명확화: 작업자 수송 25.04 기준(C) 명확화: 연료유 탱크와 보관 구역 30.02.01 기준(C) 명확화: 등급을 Major Must로 변경: 용수 허가 30.04.01 기준(C) 명확화: 용수 저장 시설 32.04.04 기준(C) 문구 삭제: 빈 작물보호제 용기의 폐기 32.10.01 기준(C) 문구 삭제: 건강 검진 32.10.05 기준(C) 명확화: 작물보호제 수송
220929_IFA_GFS_P&Cs_FV_v6_0_Sep22_en	220607_IFA_GFS_P&Cs_FV_interim_final_amended_v6_0_Jun22_en	29 September 2022	01.03 내부감사에 관한 기준(C) 명확화 05.02 기준(C) 정정: 재고 목록 — 원료 제품 제외, 비료 포함 08.02 기준(C) 명확화: 매스밸런스(mass balance) 관련 정보 보강 22.03.01 원칙·기준(P&C) 문구 삭제: 토지 전환 — 식물 분야 전반에 걸쳐 일원화 22.03.02 원칙·기준(P&C) 문구 삭제: 토지 전환 — 식물 분야 전반에 걸쳐 일원화 25.05 위험 완화에 관한 기준(C) 명확화 32.04.01 위험 완화에 관한 원칙(P) 명확화 32.04.04 위험 완화에 관한 원칙(P) 명확화 32.09.03 32.04.01 위험 완화에 관한 기준(C) 명확화
240902_IFA_GFS_P&Cs_FV_v6_0_Aug24_en	220929_IFA_GFS_P&Cs_FV_v6_0_Sep22_en	19 October 2026	11.01 GFSI 인정을 위한 기준(C) 문구 추가

저작권

Copyright 2026 Agraya GmbH, Spichernstr. 55, 50672 Cologne, Germany. 변경하지 않은 형태로만 복사와 배포를 허용한다.

면책조항(Disclaimer): 이 문서는 Google이 제공하는 제3자 서비스인 기계번역 엔진 Google Translate(구글 번역)를 사용하여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되었다. 이 번역본은 Control Union Korea(인증기관)와 Korea NTWG(한국 국가기술작업반)가 검토하였다. Agraya GmbH는 번역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번역상의 오류나 오역 가능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GLOBALG.A.P. 원본 문서는 영어로 작성된다. 영어본과 번역본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